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926-01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 대한 검토

2015. 06.

연구기관
(사) 한국농업경제학회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요 약 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첫 FTA를 시작으로, 이후 10여 년간 52개국을 대상으로 15건의 FTA를 체결하였음. 2015년 현재 19개국과 6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이렇게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109.9%(2012년 기준)에 달하는 대외의존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외교역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임.
- FTA 협상으로 인한 시장개방의 충격이 시장에 전달되면 이득을 보는 부문과 피해를 보는 부문이 있게 됨. 자동차, 전자제품 등 경쟁력이 있는 수출산업에게는 FTA가 성장의 기회가 되는 반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에는 FTA가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음.
- 정부는 농업분야의 단기적·직접적 피해보상과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대책 및 근본적인 체질개선 대책을 포함한 FTA 국내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지원이 중장기적 투융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직접적인 피해보전 대책인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이 미흡하다는 것 등 FTA 피해보전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농민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익을 피해보는 산업과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이득공유제가 자유무역의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임. 무역이득공유제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검토해 봄으로써 그 근본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쟁점

- 농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는 무역자유화(FTA)로 이득을 얻는 산업 또는 집단의 이득 일부를 각출(釀出)하여 손해를 보는 농업의 피해를 보전하자는 것임. 2012년 6월 ‘무역이득공유제’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농림

수산식품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 2015년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임.

- 무역이득공유제 찬성론자들은 자유무역의 폐해 보완, 'Kaldor-Hicks 보상 기준', 헌법적 경제민주화 달성, 롤스(J. Rawls)적 정의(Justice) 실현의 관점에서 무역이득공유제가 정당성을 가지는 제도라고 주장함. 한편 반대론자들은 시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별 순이익 및 순손실 조사·분석의 기술적 문제, FTA 활용 유인저하에 따른 FTA 효과 반감, 이중과세 및 자유시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배 등 합헌성 및 법률간 충돌문제, 한·미 FTA 협정위반 문제, 세입과 세출의 연관성 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함을 주장함.

국내외 유사제도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는 1962년 무역확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무역으로 인해 매출, 생산, 이익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이나 실직 또는 실직 위협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무역자유화에 취약한 경제주체(기업, 노동자, 농어민)를 대상으로 하며, 자유 무역에 따른 피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제주체별(기업, 노동자, 농어민) 지원프로그램(경영컨설팅 및 기술상담, 취업알선, 직업교육, 소득보전 등의 지원)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에서 시행함. 즉,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주체별 피해보상과 적응력·경쟁력 향상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임.
- 미국의 농업무역조정지원제도는 사회적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도 동시에 추구함. 현금지원보다는 기술지원, 교육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지원 등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둬. 1인당 지원금액(재정 지원 최대 12,000달러)을 늘리는 대신 지원대상을 농업소득 75만 달러, 비농업소득 50만 달러로 축소(이전에는 농업소득 250만 달러 이하 지원)하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가 실질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단순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농가에 경쟁력향상을 위한 실효성을 강

화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음.

□ 일본의 고향납세제

- 고향(故郷: 후루사토)납세제도는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지역 간 편차가 점차 심각해지자 2006년 전국지사회에서 지방세 세수 균형 방안으로 제안한 제도로서 개인, 기업이 고향 또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중앙정부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주민세를 공제하는 제도임. 즉, 국민의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간 세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적 기부’를 채택한 제도로 볼 수 있음.
- 고향 납세제도는 제도의 원래 목적인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에 대한 관심도 제고, 지역 및 지역 특산물 홍보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기부의 특성상 매년 기부금의 편차가 심하고 농촌지역보다는 대도시지역에 기부금이 오히려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함.
- 지자체의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적 세수확보 제도로서, 강제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고향 납세제도는 자발적 참여에 따라 기부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음.
 - 우선, 기부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조세 저항이 없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용이함. 또한, 기존 조세와 동일하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반면, 기부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동 제도로 모금할 수 있는 금액에 변동성이 높으며, 수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안정성이 떨어짐.

□ 한국의 성과공유제

-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서로 배분하는 제도임.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이하 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

며, 대·중소기업 간 노력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대
상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상생협력 관계 강화, 공정거래문화 정착,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
가됨.
- 성과 공유제는 협력의 범위가 과제(프로젝트) 단위로 한정된 제도이므로 발
생하는 성과가 명확하고, 성과를 얼마씩 분배할지 계약에 명시하고 있어 갈
등의 소지가 없음. 반면,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안
된 초과이익공유제는 발생한 이익에 대한 개별기업의 기여도 측정이 불가능
하고, 대·중소기업의 혁신·투자의지를 위축시키고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
아 도입되지 못함.
- 현재 농업분야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이행에
따라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일부 이득을 농업 쪽으로 배분하자는 것으로, 기업
의 초과이익을 그 하청업체에게도 분배하자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와 매
우 유사하며, 두 제도에 대한 찬반 논리도 매우 유사함.

□ 한국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조세임. 도입 당시 1994년
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하였으나 한·칠레 FTA 등 무
역자유화의 확대에 따른 농어업투융자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 6월까
지 1차 연장되었고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 등 지속적
인 시장 개방으로 2024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되었음.
- 농특세는 국세로서, UR 타결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정된 목적세임. 조세부과 측면에서는 다른 조세(조세감면
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덧붙여 부과되므로 부가세에 해당됨.
- 주요 사용처는 농어촌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증진 및 소득 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기회 보장,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사업 등으로 지정됨.

- 농특세는 무역확대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되는 경제주체나 산업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경제주체나 산업에게도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무역이득공유제와 구별됨. 예를 들어 농특세의 세원 중에 하나인 법인세는 무역을 통해 얻는 이득과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농특세가 무역이득공유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농특세는 세입원이 불안정하여 세수의 변동성이 큼. 이에 따른 세출이월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보상·경쟁력 향상 차원의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함. 이런 현상들은 결국 농어업인들의 불만과 소외감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농특세는 무역이득공유 주장과 도입배경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체 세제 개편시 농특세의 개편을 통한 농업예산 세입·세출 구조의 안정성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정책 검토 방향

□ 정책 방향

- 농업계와 비농업 산업계 사이의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검토 되어야 할 것임.
-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논의는 FTA 확대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실익을 끌고 루 향유하지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나, 비용부담의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피해 집단을 효율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법제화를 통한 무역이익의 환수는 상생 협력보다는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적절한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업·농촌이 피해의식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 상생협력방안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임. 또한 사회적 동의에 기

반하여 시혜자와 수혜자 모두가 지속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에 따른 다양한 혜택(동기 부여 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율 기부를 바탕으로 한 재단 설립방안 검토

- 무역이득공유제 본래의 상생·협력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적 기부 형태로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자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기부금 방안으로는 이미 실행 중인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예를 따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가칭) 산업 및 지역 간 상생협력 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여 농업계와 비농업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자원의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재단의 설립 및 재단 기부에 대한 충분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재단의 상생협력사업 운영 형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경우와 같이 공동투자(대기업-자본, 중소기업-기술·아이디어)를 유도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 재단이 기부금을 모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같이 시혜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용도를 위해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출연금의 조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예를 들어 현행 일반 기부금 세액 공제보다 우대하는 수준의 소득 공제 제공, 참여기업에게 동반 성장지수 가점 부여, 수출 컨설팅 혜택, 해외마케팅 지원 및 일본의 후루사토납세제처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 기대효과

- 무역자유화로 직접 이익을 보는 특정한 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혜택을 얻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참여를 원하는 모든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어 폭넓은 산업간, 지역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차 례>

I.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II. 무역이득공유제도 주장의 배경과 근거	7
1. 무역이득공유제 주장 배경	7
2. 무역이득공유제와 경제이론	11
3.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원칙	12
III. FTA와 각 분야별 대책	13
1. FTA와 무역변화	13
가. 2000년 이후 분야별 교역	13
나.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15
다. 한·칠레 FTA	16
라. 한·미 FTA	18
마. 한·EU FTA	20
2. FTA 전망과 대책	22
가. 한·칠레 FTA	22
나. 한·미 FTA	23
다. 한·EU FTA	25
라. 한·영연방 FTA	26
마. 한·중 FTA 전망	29
3. 시사점	30

IV.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쟁점	31
1. 논쟁의 경과	31
가. 국회에서의 논의	32
나. 농민단체의 논리와 제안	33
2. 찬성 논리	35
3. 반대 논리	39
가. 제도 실행의 기술적 문제	39
나. FTA 효과 반감	41
다. 합헌성 및 법률간 충돌문제	41
라. 한·미 FTA 협정위반 문제	44
마. 세입과 세출의 연관성 문제	45
V. 국내외 유사제도 검토	47
1.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47
가. 도입배경	47
나. 도입 근거	48
다. 주요내용	48
라.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TAAF)	50
마. 시사점	52
2. 일본 고향납세제	53
가. 도입배경 및 목적	53
나. 주요내용	54
다. 특징	55
라. 실적 및 평가	55
마. 시사점	56
3. 한국 성과공유제	58
가. 등장 배경	58

나. 주요내용	59
다. 시사점	63
4. 한국 농어촌특별세	65
가. 도입 배경	65
나. 농어촌특별세 개요	65
다. 시사점	69
VI. 정책 검토 방향	71
1. 방향	71
가. 상생협력 방안 강구	71
나. 지속성 확보	72
다.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구성	72
2. 실질적 구현 방안의 모색	72
3. 자율 기부를 바탕으로 한 재단 설립 방안 검토	73
가. 재단 설립	73
나. 역할	73
다. 기부금 납부 혜택(참여유인)	75
라. 기대효과	76
참고 문헌	77
<부록 1> 국회 회의록	81
<부록 2> 관련 법률	94

< 표 차례 >

II. 무역이득공유제도 주장의 배경과 근거

표 2-1 한·EU FTA 10년간('11년~'20년) 투융자 추가 지원액	9
표 2-2 한·영연방 FTA에 따른 10년간 투융자 계획('15~'24)	9

III. FTA와 각 분야별 대책

표 3-1 분야별 수출입 동향(MTI 단위)	15
표 3-2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16
표 3-3 對칠레 교역규모	16
표 3-4 對칠레 10대 수출입 품목(MTI 3단위 기준)	17
표 3-5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2004~2013년)	18
표 3-6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입 변화	20
표 3-7 對EU 산업별 3개년 평균 수출액 및 비중(MTI 1단위)	22
표 3-8 한-칠레 FTA 발효에 따른 주요 품목별 예상 수출액	22
표 3-9 한-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27

V. 국내외 유사제도 검토

표 5-1 미국 무역조정지원 제도	49
표 5-2 고향납세 기부현황	56
표 5-3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60
표 5-4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주요사업	61
표 5-5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율	66
표 5-6 농특세 지출구조	67
표 5-7 농림어업 총지출에서 농특세의 비중	68

VI. 정책 검토 방향

표 6-1 현행 기부금 소득세 공제제도	75
-----------------------------	----

< 그림 차례 >

I. 서론

그림 1-1 농가소득, 농업소득 추이	2
----------------------------	---

II. 무역이득공유제도 주장의 배경과 근거

그림 2-1 한·미 FTA 농업부문 투융자계획 규모(23.1조)와 주요사업	9
---	---

III. FTA와 각 분야별 대책

그림 3-1 2000년 이후 교역액 변화	13
------------------------------	----

그림 3-2 분야별 무역수지 변동	14
--------------------------	----

그림 3-3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량 추이(2004-2013)	18
---	----

그림 3-4 對EU 수출입 변화(2005-2014)	21
------------------------------------	----

IV.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쟁점

그림 4-1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화	36
-----------------------------	----

V. 국내외 유사제도 검토

그림 5-1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TAAF) 실행 절차 및 기관별 역할	51
---	----

그림 5-2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요	54
---------------------------	----

그림 5-3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대기업과 협력사의 인식	59
---------------------------------------	----

그림 5-4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용절차	62
-----------------------------	----

그림 5-5 농특세 세출 흐름도(2012년 결산기준)	69
-------------------------------------	----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첫 FTA를 시작으로, 이후 10여 년간 52개국을 대상으로 15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2015년 현재 19개국과 6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FTA 추진 규모와 속도 면에서 세계적인 자유무역 선도국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지난 10여 년간 FTA가 급속히 추진되어 온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외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통상 국가이기 때문임.
 - DDA 협상이 정체되고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GDP의 약 85% 이상을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꾸준한 경제 성장을 위해 FTA 추진이 불가피함.
 - 2010년 이후 연간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FTA의 영향이 큼. 실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7%로 전체 수출 증가율 2.4%를 크게 앞지름.¹⁾
 - 미국, EU와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7.6% 증대되고 후생수준은 27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²⁾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한·중 FTA 타결과 우리기업의 대응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10곳 중 7곳이 '한·중 FTA는 중국시장 공략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수위주기업 10곳 중 6곳은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 응답함.
 - 화장품·패션, 의료바이오, 음식료, 금속·철강 등의 산업이 혜택이 클 것이라고 응답함.

1) 대한상공회의소, 2015.01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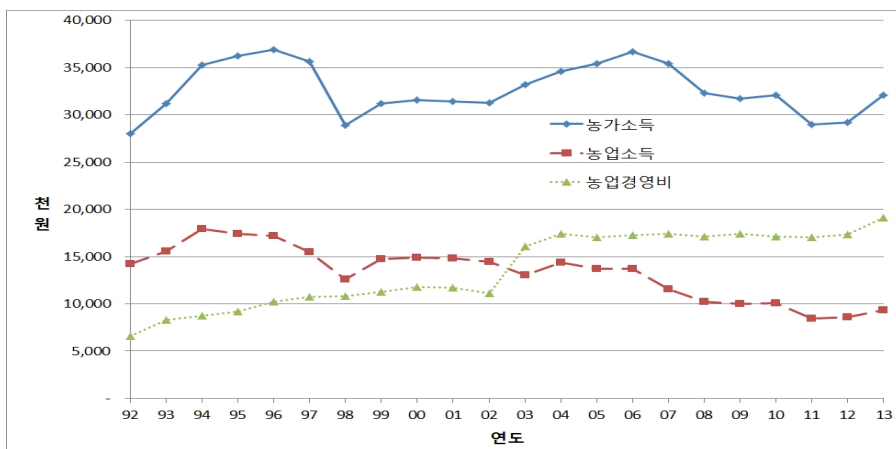
○ 그러나 시장개방과 같은 충격이 시장에 전달되면,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이득을 보는 분야와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 특히 영토가 좁고 농업생산규모가 작으며 농업생산인구, 농림어업 GDP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한국의 농업 분야에는 거대 농산물 수출국과의 FTA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가 발표한 FTA별 농업분야 피해액은 한·칠레FTA 발효 후 10년간 3,035억 원~5,860억 원,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12조 6,683억 원, 한·EU FTA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776억 원, 한·영연방 FTA 발효 후 15년간 2조 1,329억 원임.

- 또한 이러한 농업부문의 피해는 농업소득의 감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있어온 2004년 이후에는 실질농업소득이 점차 하락하는 국면을 보임.

그림 1-1 농가소득, 농업소득 추이



주: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소득, 실질경영비로 변환

자료: 이태호 외(2014) 농업분야 FTA국내보완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 반면 제조업 분야는 높은 성장을 기록함³⁾.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35개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변동사항, 자산규모, 매출액 조사 결과, 07년 4월 계열사가 총 812개 이었으나 4년 사이에 393개가 증가(증가율 48.4%)한 1,205개로 나타남. 대기업 집단별 평균 자산규모도 동 기간 14.8조원이 증가하였음.
- 매출액도 690조 원에서 1153.8조 원으로 4년 만에 67.2%인 463.8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비록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R&D 투자, 인수합병 등 내부적인 노력여하에 따른 것인지 FTA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FTA로 인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임.

○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산업에게는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이 기회가 되는 반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에게는 제약조건이 되고 있음.

○ 이처럼 FTA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문과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문이 있으므로 유리한 부문의 이익 중 일부를 불리한 부문에 지원하자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논의가 2012년 이후 꾸준히 제기됨.

- 무역이득공유제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경쟁 및 사유재산권을 위협한다는 것과 무역이익의 크기와 수혜자를 추정하기 어려워 시행하기 어렵다는 반대주장이 있는 반면, FTA 수혜산업의 이득을 추정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무역이득공유제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12년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추가된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임.

3) 2012.5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 무역이득 공유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자료에서 인용함.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산업별 순이익 및 손실실을 조사, 분석하도록 하고, ② 이를 바탕으로 순이익을 본 산업들로 하여금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FTA기금 및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농어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 ③ 또한 특별법의 발효일을 ‘한-칠레 FTA’에서 ‘한-미 FTA’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고, ④ 기금의 운용기간은 7년에서 15년으로, ⑤기금의 규모는 1조2천억 원에서 3조원으로 개정하도록 함.
- 이렇듯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법적, 제도적 정당성, 기술적 시행 가능성 등 많은 논란이 있음.
- 따라서 무역이득공유제가 과연 경제 이론적으로 타당한 제도인가, 시행가능성은 있는 제도인가, 제도가 시행된다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앞서 언급된 사항들을 토대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자유무역의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그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무역이득공유제 주장을 촉발시킨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FTA 발효 이후 각 분야별 무역현황 검토.
 - 농업분야 수출입현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분야별 수출입 변화를 파악함.

-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가능성 검토.
 -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논의 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파악함.
 - 무역이득공유제의 경제·사회 이론적 틀을 검토함.
 -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하여 「FTA 농어업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법적·제도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검토함.
 -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기까지의 애로사항, 도입했을 때의 문제점, 이점을 검토함.

-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각종 사례 검토.
 - 미국, 일본 등 농산물 수출국, 수입국의 유사사례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정책 검토 방향
 - 앞서 언급한 연구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치·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며, 무역이득공유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봄.

나.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쟁점에 대한 내용검토.
 - 무역이득공유제 찬반의견 측 원고의뢰.
 - 무역이득공유제 시행가능성 종합검토.
 - 주요국의 무역이득공유제와 같거나 유사한 제도 사례조사.

- 경제 이론적 논리 검토.

- 무역이득공유에 관한 경제이론.
- 전문가 간담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연구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이해관련 단체 의견수렴(전문가, 기업, 농업인 단체).

II. 무역이득공유제도 주장의 배경과 근거

1. 무역이득공유제 주장 배경

-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까지 미국, 인도,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등 16건의 FTA를 체결하였음.
 - 전 세계 인구(72억 명) 중 60%에 달하는 43억 명이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시장에 포함된 것임. 또한 협상중이거나 협상제개 여건조성 및 준비 중인 국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전 세계 인구의 74%가 이에 해당됨.
-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무역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중심에 대외교역이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⁴⁾는 2012년을 기준으로 109.9%에 달함. 이는 부존자원이 없어 자원을 수입하고 제조·가공·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교역이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나타냄. 그러나 높은 대외의존도는 무역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불안정성) 교역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확대는 국민경제 전체적 측면에서 이익증대가 기대되지만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농업에는 손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 한·EU FTA로 제조업 분야의 생산은 연평균 152억 달러 증가, 농업부문 생산은 17.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⁵⁾.
 - 한·미 FTA로 제조업분야의 생산은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을 중심으로

4) 수출과 수입 총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10)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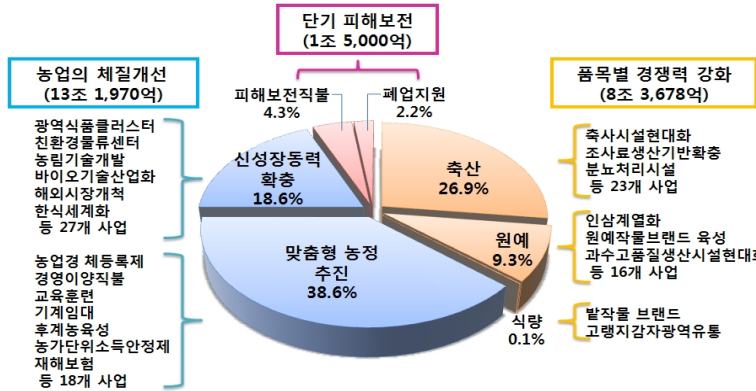
연평균 8.8조원 증가, 농업부문의 생산은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⁶⁾.

- <그림 1-1>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실질 농가소득이 꾸준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정부는 농업분야의 단기적·직접적 피해보상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 및 근본적인 체질개선 대책을 포함한 FTA 국내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200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FTA 이행에 대응하고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보완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한·미 FTA 국내보완 대책으로 총 23.1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세워 추진 중임. 세부적으로는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과 맞춤형 농정추진을 통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45개 사업에 13조 1970억 원, 축산, 원예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41개 사업에 8조 3,678억 원, 폐업지원이나 피해보전 직불과 같은 단기적 피해보전을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세워 추진 중임(그림 2-1 참조).
 - 한·EU FTA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축산업 중심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10년간('11년~'20년) 기존사업에 추가하여 2조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수립함(표 2-1 참조). 투융자 금액은 축산 관계자들의 요구가 많은 축사시설현대화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과 도축·가공업체 지원 등의 유통구조 개선이 주를 이룸⁷⁾.
 - 한·영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 발효 후 10년간('15년~'24년)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콩, 감자 등 재배업 분야에 2.1조원을 추가로 투융자하는 보완대책을 수립함. 기존 사업에서 증액되는 투융자가 1.4조원, 신규 투융자가 약 0.7조원에 해당됨(표 2-2 참조).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1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

7) 이태호 외(2014)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실효성 제고방안에서 인용

그림 2-1 한·미 FTA 농업부문 투융자계획 규모(23.1조)와 주요사업



주 2012년 1월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표 2-1 한·EU FTA 10년간('11년~'20년) 투융자 추가 지원액

단위: 천 억원

구분	생산성향상	경영지원	수급안정	유통개선	위생안전	합계
기준계획1)	32	24.8	4.6	25.5	0.9	87.8
추가계획	6.3	3.2	2.5	7.8	0.3	20.1
계	38.3	28	7.1	33.3	1.2	107.9

주 1)기준계획은 한·미 FTA대책('08~'17년, 4.7조원), 축산업발전대책('09~'17년, 2.1조원) 등에 반영된 투융자 계획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EU FTA 보완대책' 2010. 11.

표 2-2 한·영연방 FTA에 따른 10년간 투융자 계획('15~'24)

단위: 천억 원

구분	한·미/한·EU 사업(16개)	계속사업(5개)	신규사업(13개)	합계
기준계획1)	90	4	-	94
추가계획	13	1.3	6.9	21.2
계	103	5.3	6.9	115.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안)' 2014. 9.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FTA 보완대책이 주로 중장기적 투융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직접적인 피해보전 대책인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이 미흡하다

는 것 등 FTA 피해보전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됨.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농민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익을 피해보는 산업이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4,440억원이나 가격기준 발동요건으로 인해 실제 농가에 지급된 금액은 594억 원 수준임. 피해보전직불금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3년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발동되었음.
- 2014년에는 한우송아지, 감자, 수수, 고구마, 조 5개 품목에 발동되었고 수입 기여도가 0%인 조를 제외한 4개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됨⁸⁾.
- 2012년 9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단기적, 중장기적 피해보전대책과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FTA로 발생한 이득을 피해를 보는 농업분야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많은 논란으로 인해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음.

8)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189호 자료 참조

2. 무역이득공유제와 경제이론

- 무역이득공유제는 무역자유화(FTA)로 발생한 특정 산업 또는 집단의 이득 일부를 무역자유화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산업 또는 집단에게 재분배하는 제도임.
-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는 재분배 기준에는 파레토 기준과 칼도-히스 기준이 있음.
- 파레토 기준
 - 재분배 이후 모든 집단의 효용수준이 예전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고, 최소한 한 집단의 효용수준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면, 이를 개선이라고 평가함.
- 칼도-히스 기준
 - 재분배 이후 이득을 얻는 집단에 의해 평가된 이득의 화폐가치가 손해를 보는 집단에 의해 평가된 손해의 화폐가치 보다 클 때 그 변화를 개선이라고 평가함.
 - 칼도-히스 기준은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그 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그 변화를 개선으로 봄.
 - 여기에서 보상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잠재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함.
 - 각 사람의 1원은 똑같은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는 암묵적인 가정 하에 한 사람에게 생긴 이득과 다른 사람에게 생긴 손실을 비교함.
 - 따라서 칼도-히스 기준은 파레토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FTA를 사회적 ‘개선’으로 판정하게 해주는 기준임.
- 무역이득공유제는 칼도-히스 기준을 통과한 FTA가 파레토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FTA의 이득을 재배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3.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원칙

- 국가가 FTA 이익을 재배분하는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음.
- 헌법 119조는 다음과 같이 경제민주화를 규정.

헌법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배분을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헌법은 경제민주화 원칙에 따라 “적정한 소득의 배분”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 걸음 더 나아가 FTA는 조약으로 농업인의 재산권을 제약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에 따라 법률로써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무역이득 공유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양승룡, 2015).
- 현재 헌법의 경제민주화 원칙에 입각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는 「FTA 농어업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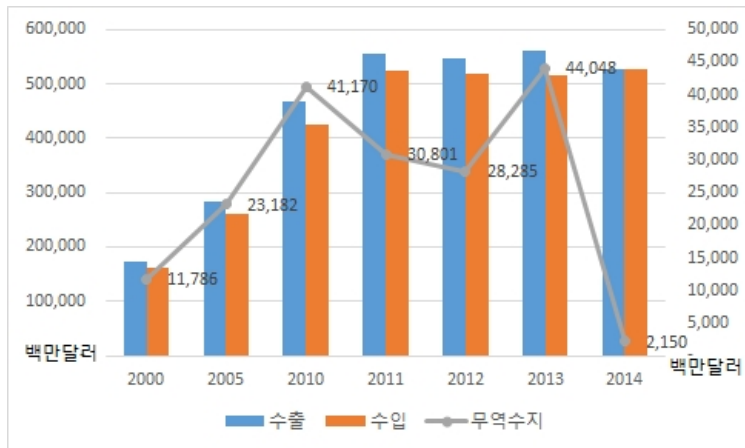
Ⅲ. FTA와 각 분야별 대책

1. FTA와 무역 변화

가. 2000년 이후 분야별 교역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01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2004년 한·칠레 FTA의 발효이후 2014년 한·호주 FTA의 발효까지 수출입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무역수지의 흑자 폭은 줄어듦.

그림 3-1 2000년 이후 교역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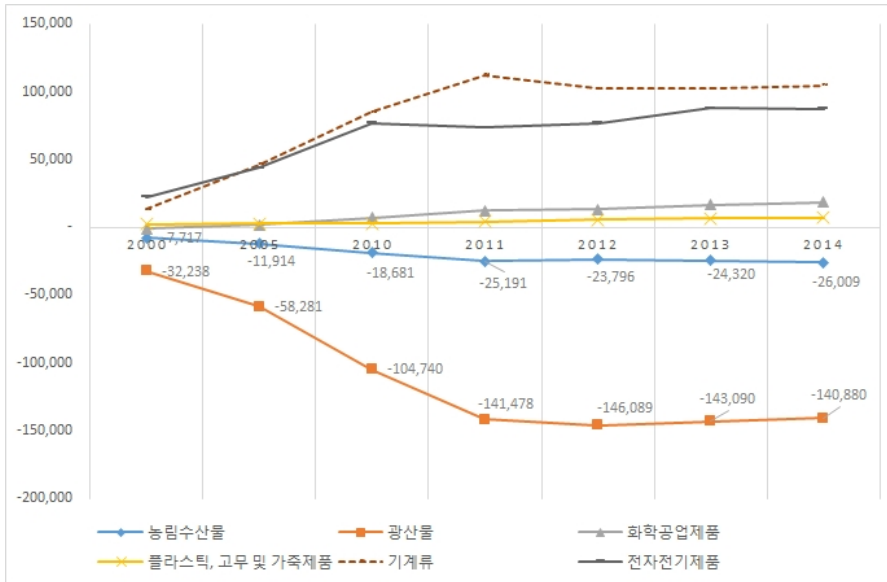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물, 광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분야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적자폭은 광산물과 농림수산물 분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광산물은 2000년 322억 달러 적자에서 2014년에는 1,400억 달러 적자로 연평균 10.5%의 적자확대를 기록하고 있고, 농림수산물은 같은 기간 77억 달

러 무역적자에서 2014년에는 260억 달러 적자로 연평균 8.6%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음.

그림 3-2 분야별 무역수지 변동

단위: 백만 달러



주) 생활용품(2014년 45억불 적자), 잡제품(2014년 4억불 적자)은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 지난 10여 년 동안 섬유류를 제외한 모든 부류에서 수출액이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모든 분야에서 증가함.

- 2014년을 기준으로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기계류(30.3%), 전자전기제품(32.1%), 화학공업제품(12.4%), 광산물(9.6%) 순이며 2000년 이후 연평균 수출 증가율도 높음.

- 수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광산물(37.3%), 전자전기제품(18.3%), 기계류(12.8%), 화학공업제품(10.0%) 순임. 반면,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생활용품(11.4%), 광산물(10.8%), 철강금속제품(9.6%)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농림수산분야의 2000년 이후 연평균 수입액증가율은 8.1%로 국가 전체 수입액증가율 8.5%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 분야별 수출입 동향(MTI 단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0		2005		2010		2014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림수산물	3,066	10,783	3,424	15,338	5,570	24,251	7,371 (1.3)	33,380 (6.4)	6.3	8.1
광산물	10,987	43,225	16,173	74,454	36,075	140,815	54,878 (9.6)	195,758 (37.3)	11.5	10.8
화학공업제품	15,734	16,749	29,894	28,245	51,624	44,752	70,988 (12.4)	52,625 (10.0)	10.8	8.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5,128	2,926	7,392	4,702	11,285	8,469	15,572 (2.7)	8,482 (1.6)	7.9	7.6
섬유류	18,783	4,788	13,946	6,765	13,899	9,924	15,936 (2.8)	14,658 (2.8)	-1.2	8.0
생활용품	3,314	1,631	2,669	3,179	2,683	5,194	3,527 (0.6)	8,087 (1.5)	0.4	11.4
철강금속제품	11,263	12,260	22,232	28,505	38,291	46,216	46,855 (8.2)	46,719 (8.9)	10.2	9.6
기계류	34,079	20,634	79,812	33,686	145,430	60,443	171,840 (30.3)	67,193 (12.8)	11.6	8.4
전자전기제품	68,932	46,646	107,437	63,511	159,897	83,125	183,926 (32.1)	96,407 (18.3)	7.0	5.2
잡제품	980	838	1,441	2,853	1,629	2,024	1,772 (0.3)	2,206 (0.4)	4.2	6.9
합계	172,266	160,480	284,420	261,238	466,383	425,213	572,665 (100)	525,515 (100)	8.6	8.5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나.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FTA를 체결하고 발효된 국가들과의 교역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국가 전체 교역의 약 40% 수준을 보임.
 -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 등 앞으로 발효될 FTA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 교역액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표 3-2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FTA 발효국	수출	548	406	711	1,457	1,925	2,163	2,421
	수입	492	385	597	1,204	1,204	1,710	1,993
	교역액	1,040	791	1,308	2,662	3,523	3,873	4,414
전체	수출	4,220	3,635	4,664	5,552	5,480	5,596	5,731
	수입	4,353	3,231	4,252	5,244	5,196	5,156	5,256
	교역액	8,573	6,866	8,916	10,796	10,676	10,752	10,987
비중		12.1	11.5	14.7	24.7	33.0	36.0	40.2

주) 연도별 실제 발효국가 기준

자료: 관세청, FTA 무역리포트 2015

다. 한·칠레 FTA

- 한·칠레 FTA 발효 후 10년 동안 양국간 교역은 4.5배 증가하였음. 수출은 5배, 수입은 4.3배 증가함. 이는 같은 기간 對세계 교역증가분(2.9배) 보다 높은 수준임.

표 3-3 對칠레 교역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對 칠레			對 세계		
	수출	수입	전체교역	수출	수입	전체교역
2003년(A)	5	11	16	1,938	1,788	3,726
2013년(B)	25	47	71	5,597	5,156	10,753
B/A	5	4.3	4.5	2.9	2.9	2.9

자료: 관세청

- 對칠레 수출품목수는 2003년 670개에서 2013년 1,118개로 66.9% 증가, 같은 기간 수입품목수는 42%(120개→207개) 증가함.
 - 기계류(160개→326개), 전기전자(134개→230개), 화학공업(84개→168개) 등 주요 수출품목이 늘어났으며, 농축산물의 수출 품목수도 증가(13개→43개)함.
- 품목별로는 10년 동안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관, 시멘트, 고무제품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금속광물, 곡류, 육류, 정밀화학원료 등의 품목이 증가함.

- 2003년 對칠레 수출비중의 31.3%를 차지하던 자동차는 2013년 52%로 상승 (1.6억 달러→12.8억 달러)하였고, 우리나라의 국가별 자동차 수출순위도 칠레가 18위 수준에서 2013년 8위로 상승함.
- 석유제품은 발효 전 대비 2.4배, 고무제품은 4.6배 증가하는 등 주로 비농업 분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5배 가량 증가함.
- 반면, 수입은 동제품, 동광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곡류, 육류, 정밀화학원료, 기호식품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호식품의 98.7%를 차지하는 포도주와 과일주스는 각각 92%(3백만 달러→36백만 달러), 99%(0.1백만 달러→30백만 달러) 증가함.

표 3-4 對칠레 10대 수출입 품목(MTI 3단위 기준)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구분	수입		
	2003년	2013년	증감율		2003년	2013년	증감율
자동차	1.6	12.8	686	동제품	5.1	16.5	222
석유제품	0.8	2.0	140	동광	2.2	16.2	645
합성수지	0.5	1.7	232	제지원료	0.8	2.9	257
무선통신기기	0.2	0.8	226	기타금속광물	0.1	2.0	1,793
자동차부품	0.2	0.8	266	곡실류	0.2	1.9	1,146
철강판	0.1	0.7	742	금, 은 및 백금	-	1.2	-
건설광산기계	0.1	0.5	495	육류	0.3	1.1	250
고무제품	0.1	0.5	292	정밀화학원료	0.0	1.0	3,195
시멘트	-	0.3	-	목재류	0.2	0.9	447
정밀화학원료	0.0	0.3	2,284	기호식품	0.0	0.7	2,044
전체	5.2	24.6	375	전체	10.6	46.6	340

자료: 관세청

- 칠레와의 FTA 체결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던 포도는 FTA 발효 10년 후 수입액이 발효 초창기에 비해 약 10배(14백만 달러→144백만 달러) 증가하였고, 키위는 6.8배(2백만 달러→12백만 달러) 증가함.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신선포도 수입량의 약 80%를 칠레산이 차지함.

표 3-5 칠레산 신선포도 수입(2004~2013년)

단위: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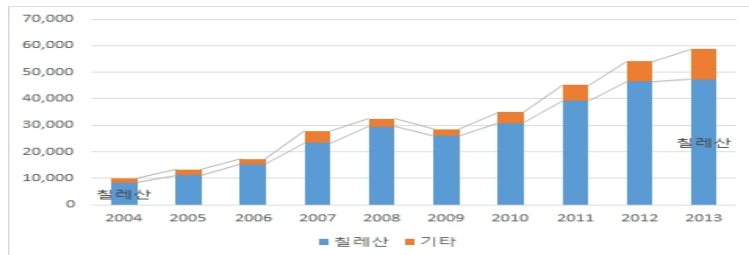
구분		2004	2010	2011	2012	2013
수입량	전체	9,970 (100)	34,963 (100)	45,189 (100)	54,192 (100)	58,743 (100)
	칠레산	8,317 (83.4)	30,894 (88.4)	39,179 (86.7)	46,597 (86.0)	47,413 (80.7)
수입액	전체	16.9 (100)	84.1 (100)	114.7 (100)	138.6 (100)	176.8 (100)
	칠레산	13.1 (77.5)	74.6 (88.7)	99.5 (86.7)	117.9 (85.1)	144.3 (81.6)

주 ()는 비율을 말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림 3-3 칠레산 신선 포도 수입량 추이(2004-2013)

단위: 톤



라. 한·미 FTA

○ 한·미 FTA 발효시점인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발효 전 18개월과 발효 후 18개월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발효 후 18개월간 수출이 약 65억 달러 증가, 수입은 2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對미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기계류, 전기전자 제품류로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기계류는 對미 수출액의 44.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발효 전에 비해 수출액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56.0%→21.1%) 여전히 가장 높은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음.

- 한·미 FTA 발효 후 가장 높은 수출액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생활용품 (39.3%), 광산물(38.5%), 잡제품(20.8%) 등이며 농림수산물분야 對미 수출액도 16% 수준의 수출액 증가율을 보임.
- 반면, 대미 수입품목 중 한·미 FTA 발효 이후 가장 높은 수입액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생활용품임. 그러나 전체 대미 수입비중이 가장 작은 품목으로 실제 수입액은 크지 않음.
-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류와 전기전자제품류는 발효 후 18개월 동안 증가율이 감소하였고, 세 번째로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인 화학공업제품의 수입액은 약 124억 달러로 발효전 대비 5.5% 증가함.
- 대미 수입액 중 14.3%를 차지하는 농림수산물은 한·미 FTA 발효후 수입 증감율이 -1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미국 내에서 가뭄 등 기상이 변으로 주요 수입 농산물인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류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2012년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에 따라 쇠고기 등 육류 수입이 제한되면서 전체적인 대미 농축산물 수입이 감소함.

표 3-6 한·미 FTA 발효 전 후 수출입 변화

단위: 천 달러, %

품목 (MPI 1단위)	발효 전 18개월 (2010.9 ~2012.2)				발효 후 18개월 (2012.3 ~2013.8)			
	수출액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수출액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농림수산물	823,606 (1.0)	19.4	10,349,613 (15.7)	35.0	954,216 (1.1)	15.9	9,035,604 (14.3)	-12.7
광산물	3,905,455 (4.7)	-9.8	3,581,166 (5.4)	95.3	5,408,897 (6.0)	38.5	3,307,499 (5.2)	-7.6
화학공업제품	4,620,186 (5.5)	46.6	11,778,213 (17.9)	24.0	4,977,794 (5.5)	7.7	12,428,266 (19.7)	5.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676,141 (4.4)	50.4	1,668,324 (2.5)	31.5	4,015,069 (4.4)	9.2	1,832,894 (2.9)	9.9
섬유류	1,949,439 (2.3)	10.4	612,798 (0.9)	42.0	2,137,757 (2.4)	9.7	531,729 (0.8)	-13.2
생활용품	694,271 (0.8)	14.4	435,455 (0.7)	20.1	967,279 (1.1)	39.3	480,625 (0.8)	10.4
철강금속제품	6,204,147 (7.4)	81.2	5,084,519 (7.7)	19.0	7,262,965 (8.0)	17.1	4,457,529 (7.1)	-12.3
기계류	33,019,369 (39.5)	56	17,758,978 (27.0)	21.9	39,978,580 (44.3)	21.1	16,998,412 (26.9)	-4.3
전자전기제품	28,290,369 (33.8)	7.4	13,502,360 (20.5)	18.5	23,933,070 (26.5)	-15.4	13,293,963 (21.0)	-1.5
잡제품	492,667 (0.6)	10	1,069,779 (1.6)	8.7	595,035 (0.7)	20.8	796,215 (1.3)	-25.6
합계	83,675,650 (100)	30	65,841,205 (100)	25.9	90,230,661 (100)	7.8	63,162,737 (10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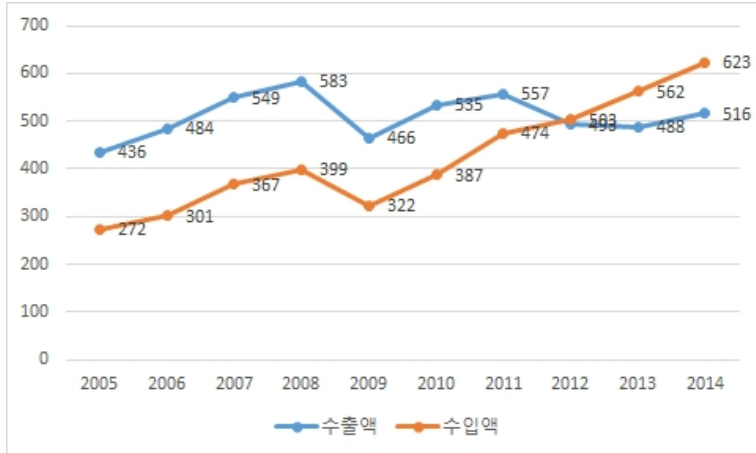
주 ()는 비율을 말함
자료: 관세청, FTA 무역리포트 재구성

마. 한·EU FTA

-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2014년 516억 달러, 수입은 6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약 10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한·EU FTA 발효(2011.7) 이전까지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던 추세가 발효 후 역전되었으며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를 보임.

그림 3-4 對EU 수출입 변화(2005-2014)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기계류(42.9%), 전자전기제품(29.3%)이 전체 수출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기계류(38%), 화학공업제품(16%) 및 전자전기제품(15%)이 전체 수입액의 68%를 차지함.
- 농림수산물은 대EU 수출비중이 2억 달러(0.4%)로 가장 작은 반면, 수입은 27억 달러로 대EU 수입액의 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7 對EU 산업별 3개년 평균 수출액 및 비중(MTI 1단위)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3년 평균	3년 평균비중	3년 평균	3년 평균비중
농림수산물	201	0.4	2,726	5.3
광산물	3,377	7.2	5,575	10.9
화학공업제품	3,367	7.2	8,061	15.8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595	3.4	874	1.7
섬유류	1,373	2.9	991	1.9
생활용품	386	0.8	1,535	3.0
철강금속제품	2,541	5.4	3,072	6.0
기계류	20,086	42.9	19,531	38.3
전자전기제품	13,722	29.3	7,808	15.3
잡제품	205	0.4	814	1.6
합계	46,853	100.0	50,987	100.0

출처: FTA 무역리포트 2014, 관세청.

2. FTA 전망과 대책

가. 한·칠레 FTA

□ 비농업 부문

- 2004년 한·칠레 FTA를 앞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한국은행 등은 양국간의 FTA 타결로 교역이 증대되고 對칠레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며 투자자 활성화 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였음.
-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후 산업자원부는 자동차, 무선전화기, 가전제품 등 7대 주요 공산품의 對칠레 수출 증가액이 단기적으로는 7천만 달러, 중장기적으로는 약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표 3-8 한·칠레 FTA 발효에 따른 주요 품목별 예상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자동차		무선전화기		세탁기, 냉장고		컬러TV 전자레인지		섬유/의류		자동차부품		타이어		
	'04(잠정)														
수출	단기	230	+50	27	+2	24	+2	23	+7	26	+4	24	+2	12	+1
예상	중장기	340	+170	32	+7	26	+4	32	+16	37	+15	26	+4	15	+4

* 단기의 경우 3~4년, 중·장기의 경우 5~13년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4.

□ 농업부문

- 반면,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과수를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함. 곡물은 칠레가 수입국이고, 축산물은 수입선 대체효과 등으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피해액은 10년간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5,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음.
- 피해 대책으로 정부는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폐업지원으로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대책 추진을 제도화함.
 - 시설현대화, 과원 규모화, 수출단지조성, 유통시설 등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조 3천억원, 2천억 원은 폐업보상금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계획이었음.

나. 한·미 FTA

□ 비농업 부문

- 한·미 FTA 발효를 앞둔 2011년 당시, 10개 국책연구기관이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양국간 교역 확대,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실질 GDP가 5.66%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예상하였으며 고용의 경우 35만 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함.
-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FTA를 통해 섬유류와 문구류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섬유류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대만, 중국, 일본 및 현지 로컬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 열세를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이에 따라 중국내 생산물량을 국내로 일부 돌리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 문구류 또한 관세철폐에 따라 가격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수한 품질에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더해지면 수출 확대도 가능하다고 전망함.
- 한·미 FTA의 타격을 앞두고 비농업분야에서는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임.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위의 법률을 근거로 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이 FTA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임.

□ 농업부문

- 농업부문의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은 관세 철폐를 유예하거나, 계절관세 및 농산물 셰이프가드⁹⁾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협정 발효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 2012년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 농어업생산액은 15년간 총 12조 6,683억 원(연 평균 8,44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발표함.
 - 분야별로 축산(72,993억 원, 57.7%), 과수(36,162억 원, 28.6%), 수산(4,431억 원, 3.5%)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함.
- 한·미 FTA가 2007년 타결되면서 피해대책으로 농어업인 피해보전 및 농업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조 4천억 원 규모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2012년 기준에 따른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함.
 - 수입 급증에 따른 단기적 피해보전장치 마련,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

9) 농산물 셰이프가드 (ASG) : 수입액이 정해진 물량을 초과할 경우 미리 정해진 고율의 ASG 발동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제도.

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 보완을 위한 경쟁력 향상 대책 추진,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강화,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기반 확충의 4가지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함.

다. 한·EU FTA

□ 비농업분야

- 기획재정부¹⁰⁾는 한-EU FTA 체결로 인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할 전망이며 취업자 수는 최대 25만3천명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함.
- 발효 후 15년간 EU에 대한 연평균 수출은 25.3억 달러 확대되는데 비해 수입은 21.7억 달러 늘어 연평균 무역 흑자는 3.6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제조업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의 수출이 늘어 연평균 3.9억 달러 흑자를 볼 것으로 분석함.
- 품목별 국내 생산증가효과는 자동차가 연평균 1조 9,432억 원 늘어나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며 이어 섬유(1,124억 원), 철강(842억 원), 생활용품(453억 원) 등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반면 EU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은 기계(-24,56억 원), 정밀화학(-2,483억 원) 등은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함.

□ 농업분야

- 우리나라가 EU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수산업은 타격이 예상되었으며 농업은 연평균 3,100만 달러 적자, 수산업도 연평균 240만 달러 적자를 낼 것이라고 예측함.
-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생산이 연평균 828억 원가량 줄어들고 낙농(-323억

10)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기획재정부, 2010.

원), 쇠고기(-280억 원), 닭고기(-218억 원) 등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수산물 중에서는 넙치류(-26억 원), 참다랑어류(-19억 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산물 생산감소액이 이행 15년차에 2,4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생산감소액 중 약 90%가 양돈·낙농 등 축산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함.
- 2009년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정부는 축산업 중심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보완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 10년간('11년~'20년) 기존 사업에 추가하여 2조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수립함.

라. 한·영연방 FTA

□ 비농업분야

- 한국무역협회는 대캐나다 수출 상위 품목인 승용차에 부과되던 6.1%의 관세가 2015년 4.1%, 2016년 2%, 2017년 완전 철폐됨에 따라 수출 확대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함.
 - 그 외에도 고무타이어, 냉장고에 대한 관세가 각각 5년, 3년 내에 균등 철폐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2014.10 공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캐나다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 달러, 고용은 1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 등으로 연평균 0.4조 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되며 수입은 원자재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발효 후 15년 평균 1.1억 달러 흑자).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은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14%, 소비자 후생은 약 16억 달러, 고용은 3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 또한 한-호주 FTA로 인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증가 등으로 연평균 2.4조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봄.
- 2015.6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공동 보도자료에서는 한·뉴질랜드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성장 될 것이며 소비자후생은 2.96억 달러가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0.62억 달러가 개선 될 것이라 전망함.

□ 농업분야

-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320억 원(총 농업생산의 0.07%)의 국내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15년 누적 4,806억 원)하였으며 생산 감소의 약 85%가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업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봄. 이에 반해 수출 확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함.
- 수산업부문은 바닷가재, 멍장어, 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연평균 약 10억 원(총 수산업생산의 0.01%)의 국내생산 감소를 예상함(15년 누적 149억 원). 수출은 어분 등 기타 수산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표 3-9 한-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실질GDP (발효 후 10년 누적)	소비자후생 (발효 후 10년 누적)	생산효과(발효 후 15년 평균)			고용 (발효 후 10년 누적)	세수 (발효 후 10년 평균)
		제조업	농축산업	수산업		
0.04%	5.10억 달러	0.4조원	△320억 원	△10억 원	1,046명	△257.7억 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보도자료, 2014.1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2015년에 발효 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5년간 총 21,329억 원(호주 16,523억 원, 캐나다 4,806억 원)의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 축산업은 총 17,573억 원(한육우 10,109, 돼지 5,139, 가금 2,121, 젓소 197

등), 재배업은 총 3,756억 원(식량작물(보리·감자·콩) 2,351, 원예작물(마늘·양파 등) 1,405)의 생산액 감소를 예상함.

- 축산물은 호주·캐나다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한 직접피해와 함께 품목 간 소비 대체로 인한 간접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농산물은 TRQ¹¹⁾ 제공 및 계절관세로 인한 직접피해(보리·콩·감자) 및 보리 수입 증가에 따라 작목 전환으로 인한 간접피해(마늘·양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은 한-호주 FTA로 인해 농축산업 부문은 호주로부터의 쇠고기, 보리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약 1,102억 원(총 농업생산의 0.22%)의 국내 생산 감소를 예상함.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2015. 6 공동자료에서는 한-뉴질랜드 FTA로 인해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 원과 21억 원의 생산이 감소될 것이라 예상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뉴질랜드 농축산분야 영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뉴질랜드 FTA가 2016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5년간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총 3,558억 원 감소될 전망이다.
 - 15년간 연평균으로는 237억 원의 생산액 감소 추정('13년 농업생산액의 0.05%)
- 농산물의 경우 키위, 호박 등에서 직접피해가 예상되나, 호박에는 계절관세를 부여하고, 키위는 출하시기가 상이하어 피해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한·영연방 FTA가 발효될 것에 대비하여 향후 10년간('15년~'24년) 피해산업에 대해 경쟁력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산업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의 대책을 마련함.

11) TRQ (Tariff rate Quotas) : 저율관세할당으로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임.

- 투융자계획은 기존의 한-영연방 FTA 대책에 따른 지원금액('15년~'24년 총 2.2조 원 추가지원)에 더하여 15년간 한-뉴질랜드 FTA 피해액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함.
- 한우·낙농을 포함한 축산업과 일부 재배품목에 대하여 '15년~'24년간 총 2.2조 원 추가 지원계획(기존 : 94,267억 원 → 조정 : 116,312억 원)
-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등 피해보전장치는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 운영함.

마. 한·중 FTA 전망

□ 비농업 분야

-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62.94%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세인하 또는 철폐가 시작되면 기존의 부품·소재 이외에도 한국산에 대한 신뢰와 한류 열풍을 타고 패션, 생활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함.
- 한·중 FTA로 글로벌 3대 경제권과 모두 FTA가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경제권과의 FTA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농업분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자료¹²⁾에 의하면 주요 한·중 FTA 농산물 분야 파급영향을 살펴 볼 때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 농업 부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국산 자급률이 낮고,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참깨, 맥아, 팥 등 TRQ 제공 품목에 대해서도 직접

12) 이병훈, 「한·중 FTA 타결 영향과 전망」,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어명근 외¹³⁾는 농축산물의 경우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이들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농산물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3. 시사점

- 우리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 GDP 성장 등 사회 전반적인 경제상태의 개선을 위해 여러 국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함. 그로 인해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량, 교역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분야별로 보면 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포함된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의 수출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광산물, 농림수산물, 섬유류 등의 분야는 수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 적자폭은 광산물, 농림, 섬유 등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 분야의 국내 생산자들은 적어도 무역정책에 따른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정부가 FTA를 추진할 때마다 발표하는 성장, 피해액 자료에서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음.
- 물론 무역에 따라 예측된 이득·피해가 아닌, 실질적인 이득과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주체의 정확한 소득자료,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등 세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함. 그러나 적어도 농업분야에서는 농가의 실질 소득이 자유무역 정책 이후에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음 (그림 1-1, 4-1 참조).

13)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IV.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쟁점

1. 논쟁의 경과

- 농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는 무역자유화(FTA)로 이득을 얻는 산업 또는 집단의 이득 일부를 각출(釀出)하여 손해를 보는 농업의 피해를 보전하자는 것임.
- 산업간 집단간 상생·협력으로 사회전체의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이러한 제도를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임. 그러나 이해관계로 인해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 운영의 책임을 맡은 정부 또는 국회가 중재자로서,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2012년 6월 이득 집단의 일부 이득을 피해 집단과 공유하자는 취지의 ‘무역이득공유제’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 2015년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임.
 -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산업별 순이익 및 순손실을 조사·분석하고,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별로 이익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 이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 또는 산업에게 ‘보상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임.
 - 이익이 발생한 산업의 순이익 및 순손실을 어떻게 조사·분석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부

답시킬 것인가 하는 논란, 그리고 이러한 부담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임.

가. 국회에서의 논의¹⁴⁾

- 2012년 국회에는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였고 이후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
-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3차 국회본회의에서 언급되었고 많은 논의가 있어왔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2. 6.13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를 “제4항 및 제8항에” 로 한다.</p> <p>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별로 발생할 순이익 및 순손실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p> <p>⑤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¹⁵⁾</p> <p>⑥ 제5항에 따라 환수된 재원은 동 법 제14조의 기금 또는 축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도록 한다.(법률안심사 소위원회(2012.9.24.)는 6항을 삭제한 대안을 수정 가결함)</p> <p>⑦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4조제1항 중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으로, “7년간” 을 “15년간” 으로, “1조 2천 억원” 을 “3조원” 으로 한다.</p>

14)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조

나. 농민단체의 논리와 제안¹⁶⁾

□ 소외된 농업·농촌과 심화되는 사회적 부작용

- 과거 경제성장 시기 정부가 ‘유치산업보호론’에 입각하여 수출 및 공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임금-저곡가 정책’기조를 유지함. 이 과정에서 기업, 정부, 도시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한 반면 농업·농촌·농민은 희생이 강요된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직·간접적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그 강도가 더욱 심화됨.
- 1995년 WTO 체제의 출범, 한·칠레 FTA 이후 농업강대국들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기업·정부와 농업계 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음. 지속적인 시장개방 속에서 전통적인 농업생산 기반은 점차 취약해졌고,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의 식량주권 유지와 같은 농업·농촌이 가진 여러 가지 순기능(다원적 기능)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
 -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는 농업계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대기업 등 정부 FTA 정책 수혜자의 사회적 책임

- 정부의 대기업 및 수출기업 중심의 FTA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대기업 및 수출기업만이 향유하는 것은 국가경제,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 또한 정부는 산업간·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음.
-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밑거름인 사회구성원들의 안정

15) ‘농림수산물위원회 전체회의(2012.9.27.)’는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음.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음. 주요 수정 내용은 ‘순이익’을 ‘이익’으로, ‘환수’를 ‘부담하도록’임.

16) 이 부분은 2014년 희망농업포럼에서 한농연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이 발제한 내용을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적 생활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먹거리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할 것임. 먹기 위해 모든 농산물을 수입해야한다면 기업 또는 국민이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결국 기업, 국가의 성장은 정체되거나 후퇴될 것임. 기업과 국가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가진 집단이 덜 가진 집단을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확보될 수 있음.

- 1사1촌 운동과 같은 도농 교류활동이 현재에도 전개되고 있으나 농업·농촌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기지, 낙후된 공간이 아닌 도시와 농촌이 동등한 협력과 이해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가칭)농어촌부흥기금 및 농업인단체-수출기업 간 상생프로그램 마련

- 앞서 언급한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수출 산업에 대해 목적세¹⁷⁾를 부과하거나 법인세 1%를 농어촌부흥기금으로 적립하여 FTA 피해 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주장함.
 - 1안으로 법인세 중 1%를 (가칭)‘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인세 1%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2안으로 FTA 체결 이후 수출산업 부문으로부터 수출증가액의 일정부분을 ‘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하는 안을 제안함.
- 법인, 수출산업에 부과된 ‘농어촌부흥세’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농림수산물식품분야 R&D분야 자금지원 확대 자금으로 활용.
 - (가칭)‘농어민 대상 햇살론’을 조성하여 신용경색(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 농업경영인들에게 소액 창업자금 대출용으로, 기존 소농들에게 대해서는 운영자금, 생활자금 대출용으로 활용.
 - 농어민들의 건강·교육·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사회적 기업 육성자

17) 세수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되는데 보통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반면,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하는 조세를 말함(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4).

금'으로 활용

- 기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추가지원 자금으로 활용.
- 또한 도·농간, 정부·대기업과 농업계간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농업인단체와 기업체 간의 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농어업·농어촌 바로알기: 기업체 임직원이 농업인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농업·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
- 국산 농축산물 급식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 급식에 우수 농축산물 사용운동 전개하여 국산 농축산물의 수요처를 확대함.
- 농업인단체-제조업체간 상생협의체 구성: FTA 피해조사, 대책연구, 각 산업별 상생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
- 이처럼 농업인 단체를 포함한 농업계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적용방법, 확보된 기금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2. 찬성 논리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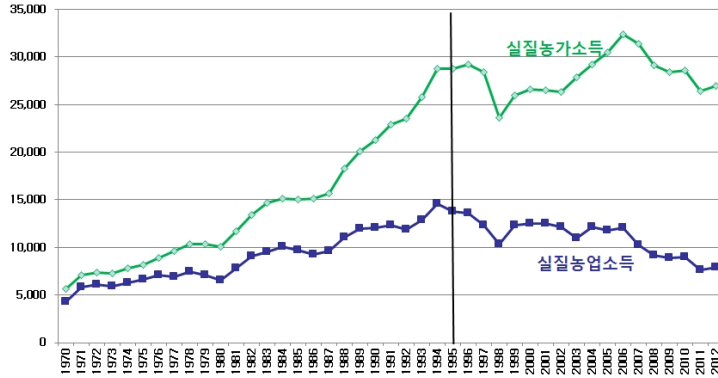
□ 자유무역에 따른 폐해 보완

- WTO 체제 출범 후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소득은 하락, 농가소득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또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 정치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1995년 WTO체제 출범을 기점으로 개방농정체제로 전환되면서 실질농업소득은 하락, 실질 농가소득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 2006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78.1% 수준이던 농가소득은 점차 하락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62.4% 수준에 머무름.

18) 이 부분은 KREI 주관 2015년 희망농업포럼에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승룡 교수가 발제한 내용 「무역이득공유제 : 쟁점과 추진방향」을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그림 4-1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화

단위: 천원/가구



자료: 양승룡, 무역이득공유제: 쟁점과 추진방향, 2014

- 무역자유화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WTO에서도 부정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함.
 - 무역자유화는 분업과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교역을 통한 가격하락, 기술확산 촉진, 생산자 시장 확대, 소비자의 선택확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지만 글로벌 경쟁 강화, 부의 집중과 불평등 분배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함.
 - 2009년 WTO/ILO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와 고용조화는 경제개혁에 필수이며 개발도상국은 교역증대로 인한 실업증가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함을 주장함. 또한 무역자유화로 발생하는 혜택을 패자에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 또한 무역자유화는 산업 특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FTA로 인한 수혜산업과 피해산업(또는 중립산업)이 명확하게 특정됨.
 - FTA의 명분과 전략은 무역이익을 통한 국부창출, 수입물가 관리,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기준의 도입, 외교 및 안보와 같은 명분을 가짐. 특히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의 육성의 명분에서는 명확하게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이 구분됨.

□이론적 · 법적 정당성

- 무역이득공유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이론은 ‘Kaldor-Hicks 보상 이론’임.
 - 정책의 변화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이득을 줄 경우 이를 파레토 개선(Improvement)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 그러나 정책의 변화로 얻는 사회전체 이득의 총합으로 손실의 총합을 보상함으로써 해를 입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을 개선(Improvement)이라 할 수 있음(Kaldor-Hicks 효율성 기준).
 - 즉, 무역이득공유제는 Kaldor-Hicks 기준을 통과한 FTA가 가능성으로만 가지고 있던 파레토 개선을 실현태(Achievable state)로 바꾸려는 제도로 경제 이론적 정당성을 가짐.

- 또 다른 경제이론으로 D. Kahneman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꼽을 수 있음.
 -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고(손실 회피: Loss Aversion) 이득과 손해는 준거점을 기준(준거 의존성)으로 평가되며, 이득과 손해 모두 효용이 체감적인 관계를 갖는 것(민감도 체감성)을 가정한 이론임.
 - FTA를 통해 얻는 어떤 이득의 (+)효용에 비해 동일한 손실의 (-)고통이 두 배 이상 크기 때문에 농업의 손실(고통)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는 엄청난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따라서 FTA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도 무역이득공유제는 정당함.
 -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로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절한 소득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119조 1항에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명시하면서, 2항에 그로 인한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정부는 2항을 근거로 소득분배, 재벌규제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

○ 정의(Justice)의 실현 관점에서 무역이득공유제는 보다 높은 명분을 가짐.

- 전체 경제와 국민을 위한 농업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때 우리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음.

- 정의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만들 수 없다.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M.Sandel 2009).

-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J.Rawls 1961).

□ 산업별 순이익 측정

○ 산업별 순이익 측정의 기술적 어려움은 불가능한 것이 아님. 현재 우리나라는 FTA로 인한 피해를 '피해보전직불제'를 통해 보상하고 있음. 즉,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산정이 가능하듯이 타 산업의 편익 산정도 가능함. 물론 모든 산업의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분명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균형발전법’

- FTA로 인한 이익과 피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명확히 하며, 비농업계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명칭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균형발전법’으로 무역이득공유제의 명칭을 개정함.
 - 법안의 목적은 농수산업 등 FTA 피해산업과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함.
- 재원 조달은 FTA로부터 편익을 얻는 모든 수혜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함.
 - 기존의 정부예산 외의 추가예산과 기업에서의 자발적 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함. 기금규모는 FTA 영향평가에 따른 충분한 수준으로 하며, FTA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을 근거로 산업별 시한을 정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토록 함.
- 기금의 용도는 FTA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유지에 이용함.

3. 반대 논리

가. 제도 실행의 기술적 문제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정부, 학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금, 부담금 부과방법의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기술적 애로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는 이미 법인세, 소득세 등의 방법으로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을 세워 추진 중이며,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이 ‘(가칭)무역이득공유특별세법’이라는 세법이 만들어져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별 발생 순이익 및 손실을 조사·분석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그 순이익이 FTA에 따른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논란임.
 - 같은 산업 내에서도 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체가 있고 손실을 입은 기업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농업계 내에서도 이익과 손해가 발생한 기업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어떤 산업에 대하여 얼마만큼 부담하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음.
 - 또한 공유된 이익을 농업 분야가 아닌 타 분야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음. 무역에 따른 피해가 농업분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해 순이익을 조사하여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커다란 조세 저항 및 계층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오히려 비농업계가 농업계를 적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 원래의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익을 본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의 권한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위임기관이 행사하는 것은 부처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기업을 전수조사 하여 이익을 파악했어도 발생한 이익이 과연 FTA라는 무역으로 발생한 것인지,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 향상 등 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임.
 - 법인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과세되고 있으므로 순이익 자체는 산출 가능하나 기업의 수익증가가 FTA에 따른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 기업의 순이익 발생원인은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 등에 대한 투자효과 등의 내적요인, 국제경기, 수입국 경제상황, 환율, WTO/FTA 관세 등의 외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함.

나. FTA 효과 반감

- 무역을 통해 발생한 이득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주요 수출기업이자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FTA 활용 유인 저하로 FTA 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
 - FTA의 주요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 섬유, 의류 등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부품업체 996개사 중 중소기업이 737개사로 전체업체의 83%를 차지함.
 - 섬유 관련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섬유수출의 90.9%가 중소기업임.
 -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담금 부과는 기업의 FTA 활용 유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FTA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
- FTA 효과 활용을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체결국과의 일본,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다. 합헌성 및 법률간 충돌문제

- 앞서 말한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여도 세금,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의 원칙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헌법원칙에 배치¹⁹⁾)’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수익에 대한 과세 외에 별도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이중과세²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

19)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재산권 침해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인정한 헌법 원칙에 배치됨.

20) FTA효과는 정당한 활동의 산물로 기업은 법인세 등을 통해 합법적 비용을 지불하므로, 추가부담금 납부는 이중과세에 해당함. 법인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출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법인출자자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을 세법에 규정하는 등 정부는 끊임없이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임. 하나의 과세(부과)대상에 대하여 세금, 부담금 등 둘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중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금이 아니라 ‘특별 부담금’의 형태가 될 경우에도 ‘헌법적 허용한계를 넘어설 소지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법무공단의 의견이 있었음.
- FTA라는 통상정책의 변화로 이득을 얻는 자와 정부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변화로 이득을 얻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FTA 특혜관세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혜택을 받음에도 수출기업 또는 이익을 보는 산업만 부담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 현재 농어촌 특별세나 그 밖의 농어촌 특별회계제도와 국가재정에 의하여 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²¹⁾.
 -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는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함에 있어서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규제·조정이 허용됨²²⁾.
 - 우리 헌법은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권의 한계로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함²³⁾.
 -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무역이득공유제는 정당한 기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하려는 입법은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설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입법에 의한 보호공익과 침해사익 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더 커야만 가능함.
 - 따라서 무역이득공유제가 헌법상의 비례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21) 과잉금지의 원칙

22) 현재 1995.11.30. [94헌가2]

23)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안된 법안에서는 어느 정도가 'FTA의 이행으로 발생한 이익'인지가 불명확하고, 부담범위도 '일정부분'이라고 하고, 부담의 대상, 요건, 부담범위 등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 법률은 명확한 용어를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 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야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 있음.
 - 헌법 제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과 기본적인 국가작용은 법률로써만 가능함.
 - 또한 「부담금 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의 대상, 요건, 부담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는 법안에서 부담의 대상, 요건, 부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부담금관리기본법」²⁴⁾의 개정도 필요함.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무역이득공유제를 부담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부담금 징수가 불가함.
- 무역이득공유제의 실제 적용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새로운 세법'이 필요하고, '특별부담금'으로 부과하려면 '헌법적 허용한계'²⁵⁾를 넘어서지 않아야

24)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부담금은 부록 2의 내용(부담금관리기본법)을 참조

25) 헌법적 허용한계(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1.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한 조건

(1)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2)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부과되어야 하고,

(3) 부과징수된 부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 되어야 한다.

2. 집단적 관련성

함. 새로운 세법이나 특별부담금은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결국 헌법재판을 통해 법률조항이나 공권력행사의 합헌여부가 판단되어야만 결론이 날 수 있음.

-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중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례를 살펴보면,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건설비용 부담금의 사례가 있고, 위헌 판례로는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안전부담금(포괄 위임에도 위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음.
-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한 부담금(유도적 부담금)의 합헌사례로는 국외여행자납부금, 수질개선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음.
- 무역이득공유제를 특별부담금 형태로 실행 할 경우, 재정충당을 위한 부담금인지,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유도적 부담금인지의 판단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라. 한·미 FTA 협정위반 문제

○ 국내 소비상품과 국외 수출 상품 간에 관세, 조세, 그 밖의 부과금 부과를 금지하는 한·미 FTA 협정 위반 가능성으로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음.

- FTA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게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고 수출한 분에 대해서만 부과금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협정문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

-
- (1) 집단의 동질성 -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객관적 근접성 -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3) 집단적 책임성 - 집단에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
 - (4) 집단적 효용성 -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 현재판례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인 경우 적어도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은 특별부담금의 본질적인 허용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책 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집단적 책임성과 집단적 효용성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ARTICLE 2.11 : EXPORT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Neither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ny duty, tax, or other charge on the export of any good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unless the duty, tax, or charge is also adopted or maintained on the good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제2.11조 : 수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그러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마. 세입과 세출의 연관성 문제

-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이 과연 농업부문 예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음.
- 농업부문의 예산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세입항목이 신설된다고 해도 농업부문 세출증가의 타당성이 없으면 세출증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낮음. 설사 농업부문 세출로 반영된다고 해도 타당성 없는 세출로 이어질 경우 예산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V. 국내외 유사제도 검토

1.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가. 도입배경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는 1962년 무역확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무역으로 인해 매출, 생산, 이윤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이나 실직 또는 실직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무역자유화에 취약한 경제주체(기업, 노동자, 농어민)에 대하여 경영컨설팅 및 기술상담, 취업알선, 직업교육, 소득보전 등의 지원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보상과 적응력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GATT 체제하에서 진행된 무역자유화(케네디라운드(1964~1967))로 인해 미국 내에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 노동자, 농업인 등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도입됨.
 - 1962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을 통해 최초 도입된 이후, 1974년 무역법을 통해 현재와 유사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2002년 5월 제반 법령을 통합한 무역조정지원개혁법(TAAR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Reform Act)이 입안되어 적용 및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음.
 -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되자 2009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따라 더욱 강화된 형태로 TAA가 수정되었으나 미국 경제가 회복되자 2011년 2월 13일부로 다시 2002년 체제로 되돌아감.

나. 도입 근거

○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의 논리적 근거는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정치적 효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²⁶⁾

-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의 제도 도입 근거는 정부가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를 목적으로 FTA를 포함한 무역확대 정책을 추진하였고,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발생하였다면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임.
-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근거는 피해 기업이나 실업자가 다시 생산활동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전체적인 비용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정부개입)을 통해 최소화 한다는 것임. 특히 농업분야 TAA와 관련하여 2009년 ARRA 개정 이후부터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논리가 강조되는 양상을 보임.
 - 2009년 ARRA 개정 이후에는 보상 차원의 현금보조 지원을 지양하고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재정 지원의 형태로 변화됨.
- 정치적 효력 강화 측면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어떤 집단이 정부정책에 따른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없다면 이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화를 저해하거나 연기시킬 충분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력을 인정한 정부가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임. 실제 1962년과 1974년 미국 무역법상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와 동경라운드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노동계의 지원 또는 최소한의 침묵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제공되었다는 주장이 있음.

다. 주요내용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업, 노동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자유무역

26) 허윤, 2007,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의 논문에서 인용 및 보완함.

에 따른 피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제주체별(기업, 노동자, 농어민)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에서 시행함.

- 기업 TAA는 무역자유화로 기업의 매출,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 경영자문, 기술지원을 제공함. 비용은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공동부담하는 형태임.
- 근로자 TAA는 무역자유화로 실직한 노동자에 대해 구직 서비스, 직업훈련, 소득지원, 건강보험료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함.
- 농어민 TAA는 2002년 무역법(Trade Act of 2002)에서 처음 등장함. 이는 농어민이 근로자라기보다는 경영주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 TAA 제도 자격요건(실직 근로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농어민을 위한 별도의 TAA를 만들. 지원요건에 맞는 농어민에 대해 기술지원, 새로운 상품개발 및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소득지원(현금보조)을 실시함.

표 5-1 미국 무역조정지원 제도

구분	기업 TAA	근로자 TAA	농어민 TAA
시행 시기	1962년 무역확대법, 1974년 및 2002년 개정	기업 TAA와 동일	2002년 무역법
목적	FTA 등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함		
	무역자유화로 매출,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한 기업 지원	무역 자유화로 인한 수입 증가와 생산기지 이전으로 실직한 노동자 지원	농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하락한 농어민 지원
담당 기관	상무부 경제발전청	노동부 고용 훈련청	농무부 해외농업청
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	농어민
지원 형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공동 부담	직업훈련, 소득지원, 구직 및 이사비용, 건강 보험료	새로운 상품 및 시장, 대안 사업 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원, 소득지원, 직업훈련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임혜준(2005), 서진교(2010), 임정빈(2011)

라.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TAAF)

- 농업분야에서는 근로자와는 다른 농어업인의 특성으로 인해 2002년 무역법부터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TAA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이 제도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오바마 정부의 ‘2009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에 따라 농업분야 TAAF가 수정되었고 수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품목 확대 :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품목에서 농산물 및 수산물에 속하는 모든 상품들로 대상품목을 확대함.
 - 지원요건 변화: 시장가격이 과거 5년 평균치보다 20% 이상 하락함에서 과거 3년 평균치보다 15%이상 하락함으로 품목지원요건을 완화함. 순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감소했음을 증명해야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해당품목의 생산량이 최근연도 생산량에 비해 감소하고 그 가격이 3년 동안의 생산자 판매가격 또는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낮음을 증명해야하는 등 신청자격요건도 완화함. 그러나 기존에는 농업조정총소득(TAGI: Total Adjusted Gross Income)이 2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했었으나 현재는 농업소득 75만 달러, 비농업소득 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배제되도록 요건을 강화함.
 - 지원대상 확대: 개별 생산자에서 생산자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가족(나이제한 없음), 생산자가 고용한 직원까지 신청이 가능함.
 - 2014년 1/4분기 이후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현재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TPP나 FTA에 의한 피해대책 방안으로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음²⁷⁾.
- 개정된 TAAF에 따른 지원혜택은 기술지원, 재정지원으로 구분됨.

27) 한석호, 2015, 미국의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 기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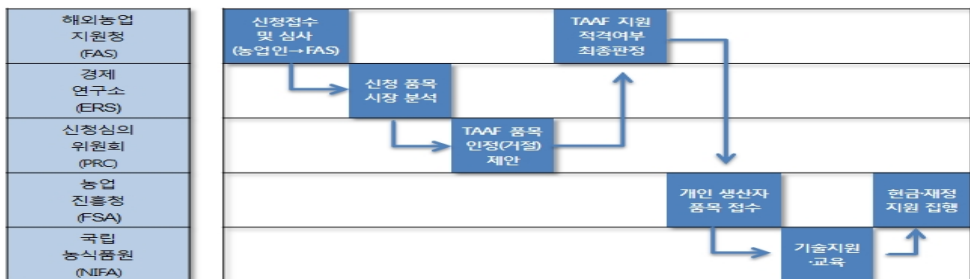
- ① 기초(Initial) 오리엔테이션(2~4시간)은 품목의 생산성향상, 유통개선, 생산 대체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정보를 제공함. 교육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지원자의 요청으로 지원함.
- ② 집중(Intensive) 기술지원(12시간 이하의 교육 및 워크샵)은 기초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교육(미네소타주립대의 농장제정 경영센터), 사업계획 설계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교육(국립농식품원 NIFA: National Institute of Food & Agriculture)을 추진함.

- 재정지원: 일생에 한번만 수혜 가능

- ① 1차 재정지원은 기술지원 교육으로 지원자가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본인의 경영환경에 맞게 초기사업계획(Initial business plan)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농무부가 검토하고 승인함. 승인되면 사업 이행 및 중장기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최대 4,000달러)을 함.
- ② 2차 재정지원은 초기 사업계획이 추후 시장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장기 사업조정계획)를 농무부가 평가하고 승인 받으면 재정지원(최대 8,000달러)을 함.

○ TAAF는 2개의 관련기관(해외농업지원청; FAS, 경제연구소; ERS)과 신청심의위원회(PRC)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함. 지원이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청(FSA)이 개별 생산자로부터 접수를 받고 현금 및 재정지원금을 집행함. 실질적인 기술지원 및 교육은 국립농식품원(NIFA)에서 실시함.

그림 5-1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TAAF) 실행 절차 및 기관별 역할



주 2009년 이전에는 국립농식품원의 기술교육 기능을 협동연구교육지도청(CSREES)에서 담당
 자료: 한석호, 미국의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마. 시사점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사회적 후생증대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자유무역 정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집단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2002년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현금보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FTA 국내보완대책 중 직접 피해보전대책(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과 매우 유사함.
 - 우리나라의 FTA 직접피해보전대책은 FTA 협정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 하락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임. 한EU FTA 발효일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제는 10년간, 폐업지원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됨.
- 그러나 2009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ARRA)’ 이후에는 보상차원의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기술지원, 교육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지원 등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지원이 전환됨. 1인당 지원금액(재정지원 최대 12,000달러)을 늘리는 대신 지원대상을 농업소득 75만 달러, 비농업소득 50만 달러로 축소(이전에는 농업소득 250만 달러 이하로 지원제한)하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가 실질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우리나라가 도입하고자 논의 중인 무역이득공유제와 도입의 근거가 유사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 근거 중 사회적 형평성, 정치적 효과 측면이 매우 유사함. 하지만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피해 사실이 발생하면 법에 의해 반드시 집행이 되도록 강제되어 있고 필요한 예산(국세를 재원으로 함)도 법에 정하고 있다는 것, 단순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농가에 경쟁력향상을 위한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같은 근거로 시행중인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와 같은 보상차원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개선이 필요함.
 - 또한 현행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는 한시적인 제도로 단순한 피해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 농가소득 향상,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이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아야 함. 이렇게 될 때 보상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이 실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야 함. 이러한 차원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2. 일본 고향납세제

가. 도입배경 및 목적

- 고향(故郷: 후루사토)납세제도는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지역 간 편차가 점차 심각해지자 2006년 전국지사회에서 지방세 세수 균형 방안으로 제안한 제도임. 이후 일본 총무성의 고향납세연구회의 논의(2007.6),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2008년 4월부터 도입하게 됨.
-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도도부현(都道府縣) 세 지수는 도쿄도(東京都)는 174인데 비하여 오키나와 현은 61에 불과하며, 최대와 최소는 2.9배의 큰 차이를 보임²⁸⁾.
- 세수 격차의 원인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로 볼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세의 10% 상당액을 자기의 고향 등 다른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후루사토稅(고향 납세제도)” 도입을 결정하게 됨.
- 태어나고 자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직한 경우, 자신을 길러준 고향 지

28) 박균조, 2008, 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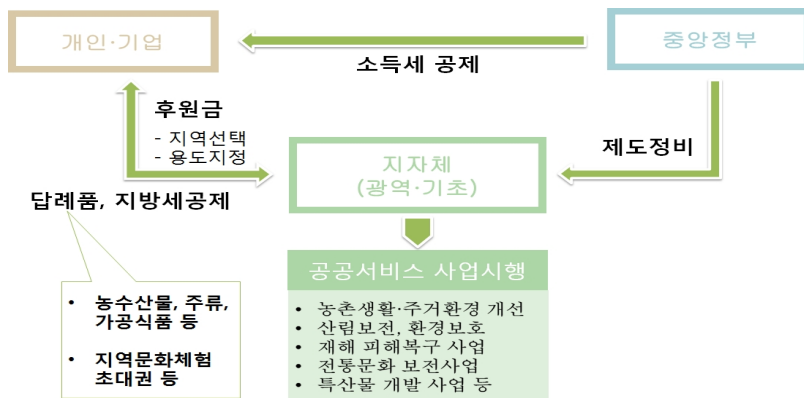
방에 자신의 의사로 납세할 수 있다는 것이 고향 납세 제도의 도입 취지임 (박균조 2008).

- 이러한 취지에서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는 조세이론상으로 지역 간 세수 편재를 시정하고 세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개인, 기업이 고향 또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중앙정부는 소득세 공제혜택을 주고,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주민세를 공제하는 제도임.
 - 기부금액 2천 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에서 세금 공제, 기업의 경우 전액 손금 처리함.
 - 지방세의 10%를 고향 지방세로 이전한다는 취지에서 주민세 공제액은 지방세의 10%로 제한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기부금 유치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함.

그림 5-2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요



다. 특징

- 태어난 지자체(고향)가 아니어도 납부할 수 있으며 복수의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함. 또한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음.
- 고향납세제의 확충을 위해 2015년에는 공제 가능한 기부한도액을 71,000엔에서 140,000엔으로 늘리고, 세제혜택의 편의를 위해 5개 지자체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기부금의 사용처를 기부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외에 답례품을 통해 기부를 장려함.

라. 실적 및 평가

- 고향 납세제도는 제도의 원래 목적인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에 대한 관심도 제고, 지역 및 지역 특산물 홍보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 지진발생시 고향납세를 이용한 피해지역에 많은 기부가 행해지고 있으며, 2010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미야자키현에도 고향납세를 이용한 기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
 - 나가노현 아난마을의 경우 쌀을 답례로 제공하면서 후원금이 증가하였고 벼농사가구 및 벼 생산이 증가, 홋카이도 히가시카와마을에서는 고향납세로 인연이 된 이주자들이 증가하기도 함.
 - 2013년 나가노현 후원금은 1억4천만 엔이었고 2013년 대비 2014년 쌀 출하량이 20%이상 증가함.
 - 히가시카와마을 이주자가 2005년 7,700명 수준에서 2014년 7,909명으로 증가함.
- 그러나 기부의 특성상 매년 기부금의 편차가 심하고 농촌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에 기부금이 오히려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함.

표 5-2 고향납세 기부 현황

단위: 명, 억 엔

연도	기부자	기부금액	최대모집지역, 금액
2008년	33,149	72.6	도쿄, 16.4
2009년	33,104	65.5	도쿄, 14.3
2010년	33,458	67.0	도쿄, 16.8
2011년	741,667	649.1	도쿄, 213.4
2012년	106,446	130.1	도쿄, 33.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또한 지자체의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적 수단이 아닌, 보완적 세수 확보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예산제약의 문제를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해결되는 아니지만,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정부분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임.

마. 시사점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국민의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간 세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적 기부’를 채택한 제도로 볼 수 있음.
- 제도 도입의 근거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지역간 세수 차이로 인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됨. 즉, 경제관련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집중된 대도시로 자본이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혜택의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정부가 강제적 수단이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방법으로 도입한 것임.
 - 그러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 존재.
 - 지방소득세는 주소지의 지자체로부터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세금인데, 주민세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지자체에 납부할 경

우 고향세를 선택한 주민과 주소지 지자체에 전액 납부한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 지방교부세와의 관계에서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로 기부금을 받아도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 않음. 그러나 세수입이 감소하는 기부자 주소지의 지자체 반발을 고려할 때 주민세 감소분을 지방교부세에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따라서 고향세로 인한 형평성 제고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오히려 행정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음.
- 고향 납세제도는 자발적 참여에 따라 기부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음.
 - 우선, 기부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조세 저항이 없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용이함. 또한, 기존 조세와 동일하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반면, 기부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동 제도로 모금할 수 있는 금액에 변동성이 높으며, 수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안정성이 떨어짐.
- 일본의 경우에도 실제로 2010년에는 67억 엔 수준이던 기부금액이 2011년에는 649억 엔으로 약 10배 가량 증가한 반면 2012년에는 전년도의 1/5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이러한 기부금의 불안정성은 결국 기부금 예산으로 추진되던 사업의 불안정성을 높여 지속성을 떨어뜨리게 될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는 무역이득공유제도의 도입을 두고 농업계, 기타산업계, 국회, 학계 등 각 계층 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발적인 방법으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할 경우,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됨. 예산의 불안정성은 결국 FTA 피해대책 사업의 불안정성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제도 도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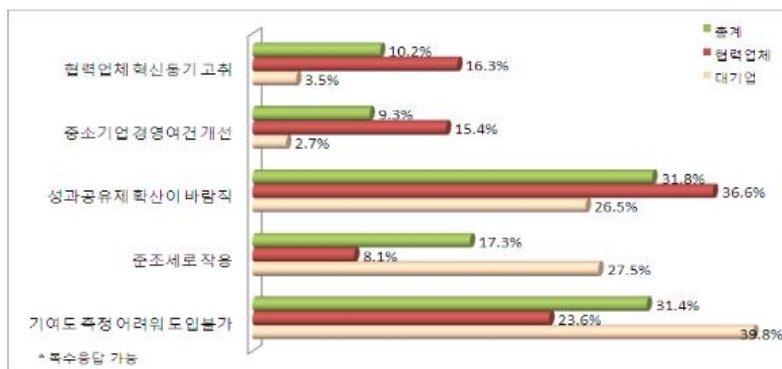
3. 한국 성과공유제

가. 등장 배경

-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서로 배분하는 계약제도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원가절감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함.
- 2004년 국내 최초로 포스코에서 성과공유제가 도입된 이후 기업의 참여가 증가(2014년 72개)추세이나 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입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요구에 의해 성과공유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임(김경묵 2011).
- 그동안 무역자유화 등 정부의 정책은 수출을 돕는 쪽에 비중을 두어왔고,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아온 반면 협력업체들은 수출단가 인하 등 희생을 강요 받아옴. 성과 공유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불평등문제가 확대되면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외에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함.
 -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성장과 이윤증대 과정에서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하청)업체의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시장지배력의 차이로 인해 협력업체는 이윤을 정상적으로 분배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임.
 -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는 목표설정이나 발생한 이익에 대한 개별기업의 기여도 측정이 불가능하고, 대·중소기업의 혁신·투자의지를 위축시키고 역량이 떨어지는 협력사의 퇴출을 저해하는 등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음. 또한 대기업은 초과이익공유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던 제품을 내부생산으로 전환하거나, 해외로 구매선을 변경할 유인이 되기도 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은 물론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 등의 반대로 인해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임.

- 제도의 당사자인 대기업, 중소기업들조차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의 2011년 설문조사에서는 주요기업(62개 대기업)의 31.8%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보다는 성과공유제 확대가 협력사에 실효성이 더 크다고 응답함. 이들의 협력사(79개)의 36.6%도 초과이익공유제보다는 성과공유제 추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그림 5-3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대기업과 협력사의 인식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9

- 이러한 사회적 반대와 기업의 요구에 의해 정부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성과공유제’를 보완·확대하였고, 현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임.

나. 주요내용

-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이하 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이며, 기업 간 노력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분배를 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대상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상생협력 관계 강화, 공정거래문화 정착,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제도의 운영은 법률(상생협력법 제20조)에 명시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하고 있음.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이 그 결과입증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면, 재단은 2단계 절차(① 도입 기업 확인, ② 성과공유 과제확인)를 거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
- 성과 공유제 시행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표 5-3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인센티브 유형	내 용
평가우대	성과공유 확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평가시 우대 -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에 가점부여 - (공공기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5대 핵심과제로 선정
정부조달 참여우대	성과공유 확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제품과 관련제품에 대해 정부조달 입찰시 가점(조달청) * 대기업이 성과공유 확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제품을 납품받아 제조한 제품 * 물품구매자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배점(0.7) -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으로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제출시
투자자원 출연 연계	대기업이 성과공유제 시행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투자자원을 출연할 경우 동반성장지수에 가점부여 * 출연금의 7%를 당해년도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포상	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개인에 대한 정부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판로지원	성과공유제 우수기업에 대한 해외동반진출 지원을 확대 * (동반무역촉진단 사업) 대기업의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IR, 구매상담 등에 협력기업과의 공동참여 지원('14년 30억원 내외, 중기청·협력재단)
공공구매	공공기관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재단으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수의계약 가능(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6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새롭게 포함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정부 R&D 관련 우대	성과공유 도입기업 또는 해당과제에 대한 성과공유 사전계약 체결시 산업부 R&D 과제 선정시 가점 부여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된 경우(3점)
	중기청의 성과공유형 R&D 사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공유 확인 절차 간소화(과제수행시 제출한 구매협약동의서·표준계약서 등을 성과공유계약서로 인정)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자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http://www.win-win.or.kr/index.do>

□ 협력재단의 주요사업

- 협력재단은 성과공유제 운영 이외에 투자재원 확보 및 운용, 기술자료 임치, 수·위탁 분쟁조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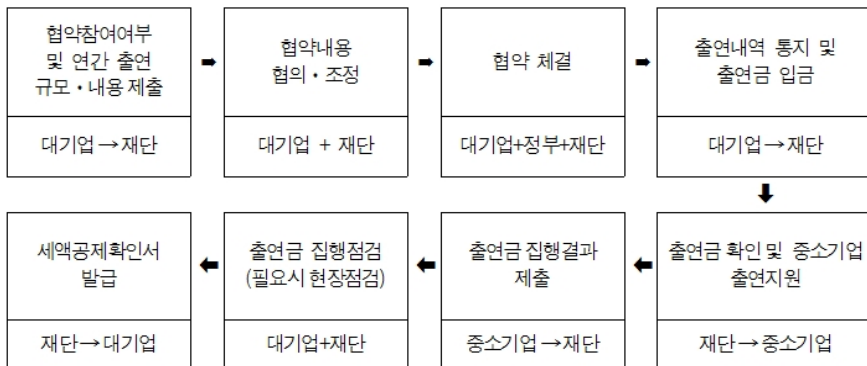
표 5-4 대 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주요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투자재원	동반성장 투자재원 관리·운용을 통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기술자료 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예방 및 기술보호 강화
동반성장 인식개선	공익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 소개, 동반성장 인식개선 및 동반성장문화 확산 유도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대기업 브랜드 이미지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 활동을 지원
수·위탁 분쟁조정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분쟁조정 무료 법률자문, 수·위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구매상담회 및 구매방침설명회	국내 전문 전시회 및 지역별 구매상담회를 통한 구매담당자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대기업의 협력회사 등록기준, 등록절차, 평가방식, 지원사업 등에 대한 안내 (연5회 개최)
원가절감형 공동사업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기간내에 완료 가능한 원가절감 과제 수행 시 과제당 최대 5천만원지원
동반성장포럼	동반성장 관련 연구주제의 개발 및 자료 확보(연3회)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목적 국내·외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민·관 공동 투자기술개발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펀드를 조성하여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지원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수탁기업협의회 및 협력사 간 교류 및 연구활동, 협력과제 수행 등에 비용 일부 지원

□ 재원 확보

- 협력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생협력법 제20조).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을 2010년 신설하여 협력재단에 기업이 출연금을 납부할 때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함.
- 협력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을 함. 대기업이 협력재단에 출연금을 입금하면, 재단은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지원, 인력 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을 지원하고 발생하는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임.
 -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2,644억 원의 출연이 있었으며, 그 중 378억 원이 지원되었음.
 - 삼성전자가 출연한 1,000억 원(2011년)으로, 신기술이 있지만 사업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별해 ① 차세대 통신, ② 클라우드 컴퓨팅, ③ 2차 전지, ④ 신소재, ⑤ 그린에너지 등의 개발과제에 중점 지원하였음.

그림 5-4.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용절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출연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출연금액의 7%)
-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 (협력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손금으로 인정됨.)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시 가점부여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자금지원(특별지원) 인정

다. 시사점

- 성과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제도이지만 협력의 범위가 과제(프로젝트) 단위로 한정된 제도임.
 - 따라서 발생하는 성과도 명확하며 성과를 얼마씩 분배할지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논란이 될 부분이 없음.
- 반면,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형평성 완화를 위해 제안되었지만 실행불가하다는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는 협력의 범위가 모호함. 이러한 모호함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해도 누구에게(협력업체들) 얼마를 분배해야하는지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움.
 - 예컨대 삼성전자의 이익을 주주, 임직원 이외에 협력(하청)업체에게까지 분배해야 한다면 얼마씩을 분배해야 할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임.
 - 기술적 불가론 이외에도 헌법위배론, 사회주의적 배분논리론 등 무역이득공

유제와 유사한 반대주장들이 있었음.

- 이러한 반대로 인해 초과이익공유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고, 제한된 범위만을 수용하는 ‘성과 공유제’를 시행중임.
- 현재 농업분야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는 FTA에 따라 많은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일부 이득을 농업 쪽으로 분배하자는 것으로, 기업의 초과이익을 그 하청업체에게도 분배하자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와 매우 유사함.
 -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두 제도에 대한 찬반논리도 유사함.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는 당사자들(대기업, 중소기업)이 서로 직접적인 협력관계에 있고, 무역이득공유제는 직접적인²⁹⁾ 협력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차이점이 있음.
- 하지만 정부의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특정산업, 기업이 이득을 보고 농업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완화하는 대책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조세, 부담금 부과형태의 강제적 수단의 무역이득공유제 이외에 성과공유제처럼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하고 반대급부가 적은 자율적 수단의 무역이득공유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자율적 수단의 재단 설립은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저항은 없으나, 필요한 예산 확보의 안정성, 지속성 유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단 설립의 구조, 예산 조달계획,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예산 사용처가 명확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는 이득을 보는 기업, 산업 또는 개인들의 참여 유인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인센티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9) 여기서 직접적이라 함은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만한 직접적인 사업 등을 말함.

4. 한국 농어촌특별세

가. 도입 배경

-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는 1995년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이 본격화되고 개방농정으로 전환되면서 도입됨.
-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이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이 취약했던 농업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며, 국내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해 짐에 따라 대책마련이 필요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농어업 구조 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고, 마련된 대책을 시행할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세(Surtax) 형태의 목적세인 농특세를 도입하기에 이룸.
 - 농특세는 도입 당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기로 하였으나 한·칠레 FTA 등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따른 농어업투용자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 6월까지 1차 연장됨.
 - 그러나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 등 지속적인 시장 개방으로 2024년까지 10년간 추가 연장됨.

나. 농어촌특별세 개요

- 농특세는 과세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이며 세수의 용도 측면에서 UR 타결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정된 목적세임. 조세부과 측면에서는 다른 조세(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부과되므로 부가세에 해당됨.

- 목적세로서 농특세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조세임.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대상은 수차례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조세감면액, 저축감면, 개별소비세액, 취득세액,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액, 증권거래금액에 대해서 징수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농어민 또는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해서는 감면함.

표 5-5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율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30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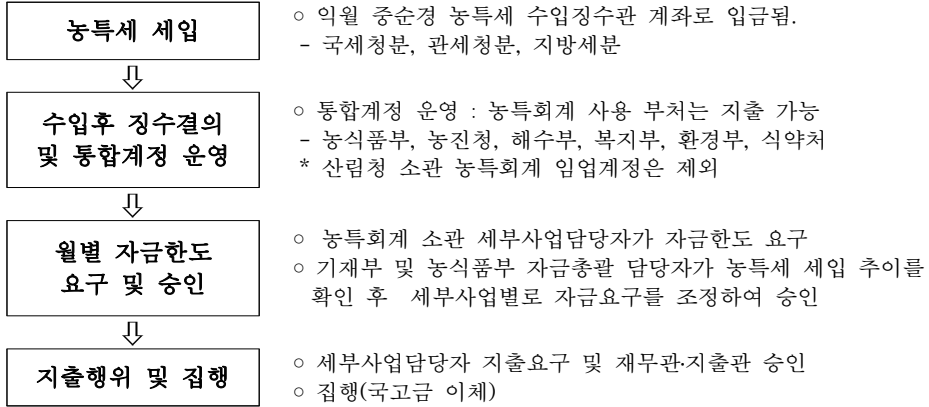
자료: 농어촌특별세법

□ 지출구조 및 주요사용처

- 농특세는 익월 중순경 국세청분, 관세청분, 지방세분이 계좌로 입금됨. 입금된 금액에 대해 농특회계 사용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해양수산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는 지출이 가능함. 담당자의 자금지출요구에 따라 재무

관, 지출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사업에 집행됨.

표 5-6 농특세 지출구조



- 주요 사용처는 농어촌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 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기회 보장,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사업에 사용됨.

<p>①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현장에로기술 개발, 농신보기금 지원(출연), 어항건설,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p>②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및 여성·아동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관련, 소득 중 일부 직접 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 소득 활동,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p>③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하여 교육기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농림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의 취업 교육·훈련, 평생교육,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p>④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 오·지·도·서 교통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기초 생활여건 개선, 농산어촌 정보화, 농산어촌 거점지역 육성, 문화·복지시설 지원, 교류확대, 농산어촌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관광휴양자원 개발,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농특세 문제점

- 농특세는 시행 초기인 1995년 1.54조 원으로 농림수산 총지출 규모의 19.7%였

으나, 2005년 18.4%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농림어업 총지출의 30.4%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재원임.

- 농식품재정에서 농특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일반회계와의 구분이 모호해져 다음과 같은 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세입원의 변동성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규모가 불안정적임.
 - 농특세의 주요 세입원 중 경기변동과 관련이 높은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비중이 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음³⁰⁾.
 - 농특세사업과 일반회계사업 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2012년 농특세 세출흐름을 보면 48.7%가 구조개선계정으로 진출되며, 나머지 재원도 일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추진에 활용되어 목적세로서 적합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 세수부족에 따라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규모가 2009년 993억 원에서 2012년 7,904억 원으로 확대됨.

표 5-7 농림어업 총지출에서 농특세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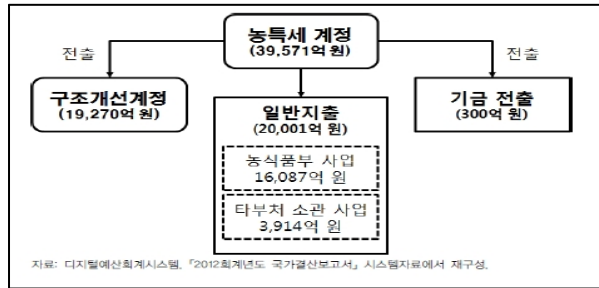
구 분	단위: 조 원, %					
	1995	2005	2007	2010	2011	2012
농림어업 총지출 규모	7.6	14.1	15.9	17.3	17.6	18.1
농어촌특별세	1.5	2.6	3.3	4.1	4.2	5.5
비 중	19.7	18.4	20.8	23.7	23.9	30.4

주: 농림수산 총지출 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농특세액은 예산액임.

자료: 박준기, 김미복(2014), 농어촌특별세의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

30) 박준기 외(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특세의 46.4%를 차지하는 증권거래세의 변이계수는 31.0, 22%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변이계수는 33.0, 7.5%를 차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49.0의 변이계수를 보임. 즉, 전체 세입원의 약 76%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5 농특세 세출 흐름도(2012년 결산기준)



자료: 박준기, 김미복(2014), 농어촌특별세의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

다. 시사점

- 농특세는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하여 세원 면에서 무역확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경제주체, 산업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논리를 찾기는 어려움.
 - 농특세의 세원 중에 하나인 법인세도 이득을 얻는 기업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무역이득공유의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 국가가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자유무역을 통해 사회전체의 후생극대화를 위한 것이므로, 무역의 이득과 손실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무역이득을 분배해야할 대상이 반드시 특정 기업, 특정 산업으로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지원대상도 농어업인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그러나 제도 도입의 현실성 차원에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사회적 저항과 갈등, 시행에 따르는 엄청난 행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비농업계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해 자금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 중임

- 무역자유화에 따라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산업이 농어업분야라는 사실, 농업과 농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안임.
 - 농특제도 농업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입이 가능한 것이었음.
- 농업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경쟁력 향상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를 갈등 요인이 다분한 조세, 부담금 형태로 도입하기보다는, 제도의 도입배경이 유사한 농특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농특세는 UR타결,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임.
 - 그러나 농특세는 세입원이 불안정하여 세수의 변동성이 큼. 또한 이에 따른 세출이월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보상·경쟁력 향상 차원의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함. 이런 현상들은 결국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들의 불만과 소외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무역이득공유 주장과 도입배경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체 세제 개편시 농특세의 개편을 통한 농업예산 세입·세출 구조의 안정성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VI. 정책 검토 방향

1. 방향

가. 상생협력방안 강구

-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주장은 FTA 확대 등 개방으로 인한 실익을 골고루 향유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농업계와 산업계간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갈등을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진정한 상생의 의미가 담긴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현재의 무역이득 공유제 주장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부담의 주체를 특정집단에 게 부담시키기 때문임. 현재의 주장에서는 비용의 부담 주체가 환경오염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집단이 아니라, 무역환경을 잘 활용한 기업이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짐.
 -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저항이 가장 적으면서도 피해보는 집단을 효율적으로 감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무역이익의 환수를 법제화하여 특정집단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함.
-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로 농업·농촌이 피해를 입고 소외된다는 의식에서 최대한 벗어나 농업계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계에 대한 비난 확대는 결국 소외의식 가중, 농업인의 자존심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농업인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참여하고 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식의 회복, 즉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속성 확보

- 상생협력방안의 지속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동일한 목적을 가진 기존의 제도가 있다면 여건 변화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동의에 기반하여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해자와 이해자 모두가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참여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함.
 - 자발적으로 참여하되, 참여에 따르는 혜택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혜택과 더불어 개인 또는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함.

다.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성

- 확보된 재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도를 확정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분명한 필요성이 있으나 일반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

2. 실질적 구현 방안의 모색

- 무역이득공유제 본래의 상생·협력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자율적 기부 형태로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자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기부금 방안으로는 새로운 상생모형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미 실행되어 정착되고 있는 ‘대·중소 기업 협력재단’의 예를 따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출연금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자율 기부를 바탕으로 한 재단 설립 방안 검토

가. 재단 설립

- ‘(가칭) 산업 및 지역 간 상생협력 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여 농업계와 비 농업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자원의 수요처를 발굴함. 기부동기 부여와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 추적·용도확인 시스템을 구축함.
- 재단에 기부하는 데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여러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단과 관련된 사항을 삽입하여 재단설립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 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개정이 필요함.
 - 기업이 출연금을 납부할 때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함. 특히 기부 동기 부여를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역할

- 상생협력사업의 운영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경우와 같이 공동투자(대기업-자본, 중소기업-기술, 아이디어)를 유도하고 공동투자로 발생한 수입을 공유하는 사업을 직접 운

영하는 것.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³¹⁾(2006년 설립)와 같이 기부금을 모금하고 그 기부금을 통해 1사1촌 운동 등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
- 일본의 후루사토 세제와 같이 시혜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용도를 위해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

○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 축적된 자원이나 기부금의 용도와 사용경로 및 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추적·수집하여 시혜자와 공유하는 것.
- 시혜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의 적절한 수요처를 개발.
-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부류·지역별로 분류하고 기부자가 직접 지역 또는 사업의 성격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예를 들어 기부금을 납부하는 개인·기업이 특정한 농촌 지역, 농촌 마을 등을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분류된 사업군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부메뉴를 개발.
- 기부금 사용처의 불균형이 완화되도록 조율.³²⁾

○ 농업인이 재단의 공익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

- 도시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시혜자에게 제공.
- 기업, 주부모임 등에 ‘좋은 국산 농축산물 고르기’등의 재능기부.

31) 최근에는 일반기업의 기부보다는 농협구성원들의 기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32) 시혜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 특정 지역이나 사업으로 기부금의 용도가 편중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기부금의 사용처별 불균형을 정부출연금으로 보완하거나, 기부금액의 20~30%는 균형집행을 위해 재단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 납부 혜택(참여유인)

□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출연금의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현행 기부금 소득세 공제보다 다소 높은 수준(우대)의 소득 공제를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보다 우대하는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액 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가능.

표 6-1 현행 기부금 소득세 공제제도

구분	기부금	정치자금
개인	법정기부금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10만원 이하는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5% 세액공제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전액 손금처리
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의 50% 손금처리	

○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가점부여, 수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구상.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함(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에는 3년간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출입국시 혜택을 부여함).

○ 일본의 후루사토납세제는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하여 기부금 모집을 위한 혜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개인이나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납부할 때에 수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부금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 예를 들어, 지역 농특산물, 전통시장 상품권, 농촌마을 숙박권, 체험 프로그램 참여권, 지역축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기부금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

공하는 기부 유인책을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제공 가능.

라. 기대 효과

- 무역자유화로 직접 이익을 보는 특정한 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혜택을 얻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참여를 원하는 모든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어 폭넓은 산업간, 지역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 적절한 참여 유인을 통해 제조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금 등 법률 강제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과 달리 조세저항 등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음.
- 독립적인 재단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재단의 재원은 정부 예산과는 별개이므로 농업인 지원 자금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10.
- 기획재정부, 농림수산물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2010. 11.
- 김영귀, 김혁황, 엄준현, 김도희, 「한·미 FTA 3년의 이행 현황과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3.
- 관세청, 「FTA 무역 리포트」 vol 1~vol 10. 2013. 2014. 2015.
- 관세청, 「통계로 보는 한칠레 FTA 발효 10년」, 2014.
- 농림축산식품부, 「한·EU FTA 보완대책」, 2010. 11.
- 농림축산식품부,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안)」, 2014. 9.
- 농림축산식품부,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 9.
-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186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10. 1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10.
- 박균조, 「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2008.
- 박준기, 김미복, 임지은, 「농어촌특별세 기한 만료에 따른 농식품재정분야의 전략적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박준기, 김미복, 「농어촌특별세의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손재범,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방안」, 희망농업포럼 자료집, 2014.
- 송백훈, 김홍중, 이준규, 서진교, 「한·미, 한·EU FTA 동시추진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양승룡, “무역이익공유제: 쟁점과 추진방향” 희망농업포럼 자료집, 2015.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한·중 FTA 타결과 농업부문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엄명배, “일본 후루사토(故郷)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15권 제3호, 2010.
- 이명현,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검토”, 희망농업포럼 자료집, 2014.
- 이병훈, 「한·중 FTA 타결 영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이태호, 임정빈, 이문호, 김규호, 어혜선.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4.
- 이동근. “FTA는 한국 경제의 성장판”, 대한상공회의소. 2015. 1.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관련 인식실태 및 시사점」, 2011.
- 주현, 홍지승, 지민웅, 김경목, 「성과공유제 실태분석 및 확산방안」, 산업연구원, 2012. 11.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무역이득 공유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 2012. 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2014. 6.
- 한석호, “미국의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희망농업포럼 자료집, 2015.
- 허윤,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 국제통상연구, Vol.12 No.1. 29-55.
- 정재화, 「한·칠레 FTA 발효 3년 수출입 동향분석」, 한국무역협회, 2007.3.
- 최세균,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KREI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참고 법령 및 통계

농어촌특별세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국회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010.do>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http://www.win-win.or.kr/index.do>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main.screen>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물수출지원정보(aTkati) <http://www.kati.net/dati.do>

<부록 1> 국회 회의록³³⁾

1. 농림수산물위원회 - 제311회 제3차, 2012년9월27일³⁴⁾

가. 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안)
- 홍문표·황영철·경대수·박민수·김근태·이종진 의원안을 통합한 것
- (주요 내용: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산업별 순이익 및 순손실을 조사·분석하고,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농어업 분야에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 회의록 주요 내용

1) 농림부장관 모두 발언(서규용)

-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 대해서 순이익을 환수해서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이 대책, 개정안 4조는 우선 저회들이 법인세나 소득세로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회수해서 지금 농어업 보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이대로 해서 순이익을 다시 환수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 (조세부과를 위해서는)법형식 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이것을 새로운 법안을 제정한다든지 이 법에서 넣는다고 그러면 과세절차라든가 요건 조항을 신설해야 됨
 - (환수하려면)어떤 산업에서 순이익이 나왔느냐, 또한 같은 산업 내에서 이익을 보는 업체와 이익을 보지 않는 업체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수할 때 이익의 범위라든가 환수 대상자 이것에 대

33) 부록(국회 회의록)은, 각 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34) 농림수산물위원회(2012.09.27.)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음.

(대안)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정)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관계부처나 정부 법무공단에 물어본 결과

- 지식경제부에서는 ‘합법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의 원칙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수익에 대한 과세 외에 별도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 법무공단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도에 판단한 특별부담금 같은 항목인데, 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넘어설 소지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 어떤 세원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감

- 농특세를 확충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특세법)법인세나 관세에 대한 조세감면액의 20%를 지금 농특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30% 올린단든지……
- 개별소득세, 소비세 있지 않습니까, 명품에 대해 하는 것. 한·미 FTA로 명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0% 농특세를 하는데 이걸 20% 한다든지 이래 주면, 현재 지금 우리가 농특세로 회수하는 게 한 5조가 됩니다. 이것을 7조, 8조 하는 것이 현실적임.

2) 주요 토론 - 제4조제4항, 산업별 순손익 조사·분석 가능성

○ 위원 질문(장윤석 위원)

- 1) 이 법의 4항과 5항을 보면 FTA로 인한 다양한 산업별로, 이익이 생기는 산업은 무엇이며 피해가 생긴, 손해가 생긴 산업은 무엇이며 그 산업별로 순이익·순손실을 조사·분석하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오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을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2) 그러면 이 4항이 들어감으로써,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매크로하게 그 산업별의 추정치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 4항이 들어감으로써 앞으로는 개별 기업별로 FTA로 인해서 이익이 얼마나 생겼느냐 하는 것을 개별 기업으로

부터 보고를 받거나 또 개별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내야 되겠네요? 그게 가능한지요?

- 3) 그러니까 4항에 따라서 지금, 새로이 4항에 의해서 주어지는 조사·분석을 정부가 실제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장관 답변

- 1) 그건 전체적으로는 나오지요. 왜냐하면 농업 분야는 피해가 얼마나, 한·미 FTA로 인해서 12조 7000억이다, 매년 8440억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 2)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관세를 낮춰줘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비용 절감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직원을 만약에 셋 있는 것을 하나 저기해서 둘로 해서 이익을,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면 FTA로 해서 그 이익을 본 것이냐 이것을 정부에서 확실히 해 줘야 거기다가 과세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 3)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3) 주요 토론 - 제4조제5항, ‘환수’, ‘순이익’ 관련

○ 위원 질문(장윤석 위원)

- 1)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한다고 그러는데 이 환수가 법적으로 됩니까? 조세입니까, 됩니까?
- 2) 그러니까 “환수하여” 이러니까 지금 부담을 느끼시는데 “환수하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각에…… “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산업의 어떤 이익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농어업 쪽의 어떤 지원대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마련하실 것 아니에요?

○ 장관 답변

- 1) 준조세지요, 조세. 특별부담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 예, 그건 가능합니다.

○ 의원 토론(배기운 위원)

- ‘환수하여’ 이것은 재원 마련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환수’라는 말이 아주 거슬리는 것은 맞습니다.
- ‘환수’라는 표현이 정 거슬린다면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이 표현보다는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의 범위 내에서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 위원 토론(장윤석 위원)

- ‘환수’라고 그러면 결국 이 법이 어떻게 읽히느냐 하면 ‘환수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 그러면 환수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수법을 만들려면 결국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을 특정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된 기업으로부터 연간 매출 손익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이익 중에서 FTA로 생기는 이익을 구분해서 보고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 이제 이럴 경우에 그 개별 기업의 또 다른 불필요한 저항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FTA로 인해서 분명히 이익을 봤다는 그 산업영역의 기업인데 그 사람들은 보고서를 어떻게 내는가 하면 ‘FTA로 번거는 별로 없습니다’
- 이렇게 보고서를 낼 경우에 그걸 조사하고 또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행정을 어디서인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세무서에서 할 수도 없을 테고 농림부에서 할 수도 없을 테고 지식경제부에서 이걸 전담할 부서가 있는 거도 아니고
- 그러니까 이 환수 대책을 만들라고 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로 하여금 FTA로 이익 보는 기업, 산업의 그 이익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정부가 환수법을 만들 수

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농특세법의 대상을 FTA로 이익 보는 기업으로 한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장관 답변

- (농특세법의 대상을 FTA로 이익 보는 기업으로)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토론(김영록 위원)

- ‘순이익’에서 부담해야 될지 또 매출액에서 부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이익에서 하는 부분을 빼고요.

- ‘부담토록 한다’는 뜻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세금으로 할 거냐 부담금으로 할 거냐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로 남겨 두는 선언적 의미의 뜻을 살린다고 하면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면 ‘환수’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 논의 결과 및 가결선포

○ 논의 결과(위원장 최규성)

- 논의는 4조5항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위원 토론(張倫碩 委員)

- 4조5항에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 이렇게 해 놓으면 순이익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나중에 논란이 많으니까 그냥 “이익이 발생한 산업” 이렇게 하면……

○ 가결 선포(위원장 최규성)

- 예를 들면 다른 비용 때문에 손해 났는데 왜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말 나오니까 “이익”이라는 것은 포괄적……

- 의사일정 제8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 - 제311회 제13차, 2012년11월21일³⁵⁾

라. 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마. 주요 내용

1)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이한규)

- 기획재정부에서는 FTA 이익 부담, 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 연장,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 상향, 기금지원계획 수정 등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고
- 지식경제부에서도 경제적 측면과 집행 측면 및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2) 대체토론

- 김도읍 위원
 - 기재부나 지경부에서는 무역 이익에 대해서 범위나 부담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익의 범위나 부담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농어업인의 보호 또는 지원 대책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 농어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하다 보니까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방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35) (2012.11.21.) () 2 (2012.09.27.) 가 .

- 왜냐하면 이익을 보는 범위가 어떠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 수출하는 회사를 보면 83%가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체를 어떤 기업이 얼마를 내고 얼마를 할 거냐,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어업인한테 지원 규모나 내용을 얼마만큼 확대해서 하느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는 이걸 하려면 궁극적으로, 농특세를 지금 한 5조를 걷고 있습니다. 이걸 세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세율을 좀 높인다든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희선 위원

-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FTA로 인한 이득을 취득한다 하는 개념이라든지 또 부담할 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는 정의 규정이 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지요?(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그렇습니다.)
- 제 생각에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법인세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않겠습니까?(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또 부담금을 한다면 이중부담의 위험적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 그 다음에 기금지원계획이라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등 앞으로 여러 나라하고 FTA를 체결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기금지원계획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슨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FTA기금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FTA를 계속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FTA마다 별도로 기금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3) 기획재정부 의견(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 FTA 이익 부담 관련

- 안 제4조에 보면 무역이득의 공유를 위한 추가적 부담은 부담할 이익의 범위라든가 부담 대상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수입의 확대의 경우에는 그 이득이 첫째, 소비자 전체에게 가격 인하로 돌아가는 점이 있고 둘째, 수입업체도 그 이득을 향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측면의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은 수출업체에게 돌아가게 되겠는데요. 수출업체와 근로자 및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이 법안 4조처럼 규정할 경우에는 전 국민, 소비자와 수입업체·수출업체, 근로자 등을 모두 포괄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들에게 어떤 부담을 추가로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 연장 관련

- 안 제6조에는 시행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EU, 한·미 FTA 보완대책을 추진할 때 시행기간을 이미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비준동의를 해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이미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연장된 기간을 운영해 보시면서 추가로 대책이 필요하면 15년으로 더 늘리는 것을 검토를 신중히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 피해보전직불금 보전 비율 상향 관련

- 안 제8조2항에 나와 있는 피해보전직불금 보전 비율도 이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를 할 때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9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우선 시행을 해 보시면서 좀 더 성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금지원계획 수정 관련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기금지원계획 수정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FT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법률에다가 기금 규모를 정할 경우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 한·칠레 FTA 당시에는 FTA 이행지원기금으로만 지원했지만 한·미

FTA의 경우에는 기금뿐만 아니라 농특회계라든지 축산발전기금이라든지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보강 대책을 24조 1000억까지 확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가결

- 법률안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함.

3.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 제313회 제1차, 2013년2월26일³⁶⁾

바. 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사. 주요 내용

1) 전문위원 보고(수석전문위원 임중호)

- 법안에 있어서는 먼저 FTA 이익 발생 산업의 부담으로 농어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4조5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개정안은 구체적인 이익환수 규정이 없이 추상적으로 선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또 재산권 및 자유시장원리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도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고, 무역이득을 공유하기 위한 농어업인 지원비용 부담은 부담할 산업의 범위, 부담대상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기간의 연장 및 보전비율의 상향 문제입니다.
 - 법안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시책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15년간 시행하도록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36)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이미 시행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전비율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농어업인의 소득 보조 의존을 심화시켜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기금지원계획 수정 사항입니다.
 - 제14조제1항은 정부는 한·미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 5조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도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수의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매년 FTA 기금 지원 규모를 별도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FTA 기금지원계획 확대 시 회계·기금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며 FTA 보완대책이 24조 1000억 원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FTA 기금지원계획만의 확대는 실익이 없으며 FTA 이행 지원기금만으로도 지원되었던 한·칠레 FTA와 달리 한·미 FTA 보완대책은 농특회계, 촉발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조달되고 있음을 이유로 해서 개정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토론

- 소위원장 이춘석
 - 이것 농림수산식품부도 반대해요?
-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이상길
 - 저희들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역 이득 환수 문제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입법화되면 농민들은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고 이익이 나면 반드시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산업계에도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조건이 성취돼야 될 것 아니냐, 지원하는 법적부담금이나 이런 것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가 돼야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지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 소위원장 이춘석

- 그런 의견을 상임위에서 피력하셨습니까?
-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이상길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구체화되었다가 여러 가지 반대를 재정당국이 하니깐 그런 구체적인 규정을 다 빼고 선언적 의미로 규정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 박범계 위원
 - 이게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한·미 FTA나 여러 가지 FTA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일각에 편익이 발생한 반면에 일각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수익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기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이상길
 - 거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부는 지금 한·미 FTA를 위해서 재정에서 24조를 10년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 이 법은 그렇게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아예 법으로 정해서 어디에서 돈을 빼 가지고 주자…… 강제로 주자 이런 뜻이고, 정부는 그렇게 하면 재정 효율성이나 또 여러 가지 산업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 지금 현실적으로 이익을 어떤 산업에서 부담해야 될지, 같은 산업에도 피해가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데 수출이 늘어났다 해서 FTA로 인해서 이익을 다 받는 건지 그거 구분하기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 부분을 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 예를 들어서 어떤 이익의 범위라든지 부담 산업이라든지 대상자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부담하는 사람도 설득이 되어야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일종의 조세니까.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학술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설득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이익 부분과 손해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조세로 해서, 광범위하게 법인세라든가 다른 조세로 해서 충당을 해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손해 본 부분을, 피해를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박범계 위원

- 결국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얻는 수익에서 그것을 빼내기가, 계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로 전가하자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에요?

○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이상길

- 아니지요. 지금도 조세가 대부분이, 그런 이익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조세가 부담되는 거니까 결국 법인세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이익 본 분야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익 본 분야에서 조세를 거둬서 정부가 재정으로 피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 거기에 일반 법인세나, 특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얼마를 이익 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삼성의 수출이나 이런 거를, 무역을 통해서 이익 난 부분의 일부를 법인세로 징수할 거 아닙니까?
- 그러면 그 법인세에서 특정해서 어떤 돈이 FTA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지만 정부 재정이 300조라면 300조를 총괄해서 그중에 24조를 한·미 FTA 대책으로 투자하겠다는 그 부분에서 예산이 투자되는 거다 이런 거지요.

3) 계속 심사

○ 소위원장 이춘석

- 부담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이상길

-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하고 있지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춘석

- 이 부담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니까 그 부담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라고 판단하는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을 좀 가져와 보십시오, 다음까지.
- 의사일정 제8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 관련 법률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 신규·조문 대비표 - 현행 법률 대비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7인)

현행	개정안(홍문표의원 등 17인)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 ③ (생략)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별로 발생할 순이익 및 순손실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⑤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환수된 재원은 동법 제14조의 기금 또는 축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도록 한다.
<신설>	⑦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⑧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 및 제8항에----- --.
제14조(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조성) 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15년간-----3조원-----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법률안 대비표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개정안 대비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의견

개정안(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의견(법제사법위원회)
<p>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p> <p>① (생략)</p> <p>②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농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p> <p>2. 농어업인들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p> <p><신설></p> <p>3. 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생략)</p> <p>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별로 발생할 순이익 및 순손실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p> <p>⑤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⑦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p> <p>⑧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절차 등과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p> <p>-----</p> <p>-----</p> <p>1</p> <p>-----</p> <p>-----</p> <p>2</p> <p>-----</p> <p>-----</p> <p>3. 협정의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는 대책</p> <p>4. (개정안 제3호와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 미리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p> <p>1.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별로 발생할 순이익 및 순손실</p> <p>2.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p> <p>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 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게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 생략

제5조의3(가산금 등) - 생략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 생략

제6조(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 생략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 생략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 생략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 생략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생략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 생략

[별표] <개정 2013.7.16>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9.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10. 「원자력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1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출국 납부금
13.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14.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15.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16.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17.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수산물수입이익금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쓰레기유발부담금

20.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양곡수입이익금
21. 「인삼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2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3. 「축산법」 제45조에 따른 축산물 수입이익금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25.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2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2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 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29.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3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
32.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3. 「약사법」 제86조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비용부담금
34.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35.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36.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3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41.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4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4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4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4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5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1.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5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5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57.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8.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59. 「도시개발법」 제58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금
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6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